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다문화사회에서 관용(tolerance)의
확대 적용 방안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전공

문 성 화

2015년 8월

다문화사회에서 관용(tolerance)의 확대적용 방안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황 경 수

문 성 화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문성화의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년 6월

**A Study on the Ways to Expand ‘Tolerance’
in the Multi-cultural societies
- Focused on Jeju Island-**

Seong-Hwa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Soo Hw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2015. 8

A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제기	1
제2절 연구의 배경	3
제3절 연구의 구성과 흐름도	7
제2장 관용관련 이론연구와 선행연구 검토	8
제1절 관용의 개념과 유용성	8
1. 관용의 개념	8
2. 다문화주의와 관용	9
제2절 다문화관련 이론	11
1. 다문화 사회를 보는 상반되는 두 개의 국가론적 시각	11
2.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에 대한 제반 이론들	12
제3절 관용에 대한 분야별 경향	14
1. 종교적 관용의 후견주의적 성격으로써의 한계	14
2. 이주자(이민자)에 대한 관용으로써 수용조건	14
3. 관용적 정부의 명과 암, 그리고 대응으로써 융화	15
4. 관용에 대한 교육적 측면과 법적 관용성	16
5. 타자(나 외의 다른 사람) 대우의 두 원칙 : 관용과 적극적인 배려의 서(恕)	17
6. 예술분야에서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관용	18
7. 관용정책의 일환으로 체류 외국인의 체감안전도 제고	20
제4절 다문화정책에 대한 외국사례와 선행연구 검토	21
1. 외국의 다문화정책 사례	21
2. 선행연구 검토	24
제3장 관용의 실태와 욕구에 대한 분석	26
제1절 연구방법	26

1. 연구 분석틀	26
2. 연구 방법론	27
3. 조사일정과 대상	28
제2절 관용의 실태 분석결과	30
1. 관용해주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모습들 분석	30
2. 관용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분석	36
3. 제주도주민과의 갈등사례 여부 분석	41
4. 다문화가족의 사회부적응의 사례 분석	44
5. 자녀들의 사회부적응의 사례 분석	45
6. 고향국가의 문화에 대해 존중해주는 문화사례 분석	47
7. 관용과 불관용 분석의 함의	49
 제4장 관용의 확대 방안	51
제1절 초기 불관용의 단계에서의 대응	51
1. 지역 다문화에 대한 포용의 철학 정립	51
2. 반다문화(反多文化)에 대한 연구와 대응전략 수립	51
제2절 다름에 대한 인정과 관용 단계의 대응	52
1. 다문화시대 기능주의적 맥락의 새마을 운동 확대	52
2. 법적 관용의 확보에 대해 노력	52
제3절 같은 수준으로의 배려 지원하는 서(恕)의 단계와 대응	53
1. ‘관용하는 자’와 ‘관용되는 자’의 구분과 경계 허물기	53
2. 관용누적 문화운동을 통한 사회 안정 유도	53
제4절 관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성 극복 대응	54
1. 관용이 가져올 수 있는 이중적 효과에 대한 대응	54
2. 창조도시 조성으로 궁정화 유도	54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55
제1절 정책제언	55

제2절 결론 및 요약	57
□ 참고문헌	60
<부록 1>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63
ABSTRACT	72

< 표 목차 >

<표 1> 제주도내 국적별 다문화가족 현황	3
<표 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2014년 기준)	4
<표 3> 외국인 국적별 등록현황 변화	5
<표 4> 기능주의적 시각과 갈등론적 시각	11
<표 5> 조사대상자 현황	28
<표 6> 관용해주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모습들	31
<표 7> 관용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37
<표 8> 제주도주민과의 갈등사례 여부	41
<표 9> 다문화가족의 사회부적응 사례	44
<표 10>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사회부적응의 사례	46
<표 11> 고향국가의 문화에 대해 존중해주는 문화사례	47

< 그림 목차 >

(그림 1) 관용과 불관용, 서(恕)에 이르는 관용의 변증법적 지양 관계도	6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7

【국문요약】

다문화사회에서 관용(tolerance)의 확대적용 방안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 그리고 탈북 새터민에게 집중면접하여 제주도에서 느끼는 불관용 문제실태를 분석하고 이의 해결과 관용의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외국인 이주자의 체험적 시각을 통하여 제주사회의 관용성의 수준을 측정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는 계속 늘어나는 외국이주민을 제주도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문화와 관련된 논의, 그리고 관용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제주도의 관용과 불관용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찾아내고, 그 지표에 따라 제주도지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관용과 불관용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찾아 강화하거나 제거하는 정책,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시하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에 대해서 경계의 차원을 넘어서 발전의 에너지와 원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야 할 상황이기도 하며, 결국에는 서로 이해하고 같이 공진(co-evolution)하는 융화된 공동체사회를 만들어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에 대한 관용의 변증법적 지향과 발전을 통한 융화적인 공동체 사회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진행하고자 했다.

이주에 대해 1단계에서는 다름에 대해 경계하고 그러한 경계가 많아지면서 갈등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이 단계는 불관용의 단계가 될 것이다. 2단계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교육을 통해서 관용의 노력과 현상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3단계에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관조하거나 무관심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단계로 통

합적 발전을 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을 면접하여 제주도에서 느끼는 불관용 문제 실태를 분석하고 이의 해결과 관용의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문화와 관련된 논의, 그리고 관용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여 제주도의 관용과 불관용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찾아 정리하였다.

- 1) 관용해주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모습들
- 2) 관용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 3) 제주도주민과의 갈등 사례 여부
- 4) 다문화가족의 사회부적응의 사례
- 5) 자녀들의 사회부적응의 사례
- 6) 고향국가의 문화에 대해 존중해주는 문화사례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제주도민들은 관용적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아는가가 관용적이라고 느끼는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문화의 차이에 대한 해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쇼핑할 때 불관용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은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가난한 후진국의 외국인들에게 편하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었다. 관용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주도를 고향 국가 친지나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불관용을 제거하고 관용의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첫째, 초기 불관용의 단계에서의 대응이다. 지역 다문화에 대한 포용의 철학 정립이 필요하다. 동시에 반다문화(反多文化)에 대한 연구와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과 관용 단계의 대응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시대 기능주의적 맥락의 새마을 운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 다문화정책의 수준은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같은 수준으로의 배려 지원하는 서(恕)의 단계와 대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하는 자’와 ‘관용되는 자’의 구분과 경계 허물기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관용누적 문화운동을 통한 사회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관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성 극복 대응도 필요하다. 먼저 관용이 가져올 수 있는 이중적 효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긍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창조도시 조성으로 다문화상황을 긍정화로 유도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문화가 자연 환경적 고립, 그로인한 패쇄적, 배타적인 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지만, 현재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잘 보존된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국제 자유도시로의 발전을 표방하고 있다. 향후에는 제주사회가 다양한 출신지의 이주자들과 어우러지고 그 다양성이 제주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용의 철학의 일상화와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 탈북 새터민을 집중 면접하여 제주도에서 느끼는 불관용 문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의 해결과 관용의 사회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는 계속 늘어나는 외국이주민들을 제주도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용이란 차이를 존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불관용은 차이를 두려워하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이경호, 1997). 관용을 실천하는 것은 다원주의적인, 특히 다문화적인 모든 현대사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고립과 배타적인 환경속의 제주인의 삶의 환경이 이제 교통과 통신 등이 발전에 힘입어 내국인은 물론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인적 구성에서도 외국인 제주거주 비율이 2%의 시대를 넘어서는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제주사회의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직접체험을 바탕으로 한 시각을 통한 증언을 통하여 제주사회와 제주인의 외지인(특히 외국인)에 대한 관용(Tolerance)의 수준을 도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제주거주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 사회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찾아내려는 것이 이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문화와 관련된 논의, 그리고 관용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제주도의 관용과 불관용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찾아내어 정리하고, 그 지표에 따라 제주도지역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

태를 분석하고 관용과 불관용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찾아 강화하거나 제거하는 정책, 그리고 종합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관용의 정책을 펴서 제주 공동체를 용화의 사회로 이끌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로서 황경수와(2014)의 연구에서는 제주에 이주·정착한 다문화인들의 이주적응도와 이주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본인에 비해 자녀의 이주적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현지 가족과 언어문제와 문화차이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정착 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언어문제가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녀교육 부분(17.1%), 고향의 그리움(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문화 이주자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다문화 이주자 본인에 대한 지원분만 아니라 가족(특히 배우자)과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둘째,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실시, 셋째, 다문화공생사회 만들기, 넷째, 다문화 출신지의 문화특성 분석 및 상이한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다문화가족의 증가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낸은 물론 자녀들도 성장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위한 정책으로는 축제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주민과 원주민과의 갈등의 문제, 다문화가족의 사회부적응의 문제, 자녀들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미래사회의 불안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인식이다. 적극적인 관용정책과 이주민도 원지역 주민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식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고용자들의 실태를 보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 대한 자료가 발표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로 설명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다문화가족 중심으로 보면, 2013년 현황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2,423가족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1,665가구이며 서귀포시가 758가구이다. 다문화가족으로는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다문화가족이 32.2%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베트남의 경우가 30.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제주도내 국적별 다문화가족 현황

구 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비율)
동 북 아	합 계	2,423	1,665	100%
	소계	979	711	268
	중국	433	320	113 17.9%
	중국(한국계)	348	234	114 14.3%
	대만	28	25	3 1.2%
	일본	152	123	29 6.3%
동 남 아	몽골	18	9	9 0.7%
	소계	1,193	747	446
	베트남	746	481	265 30.8%
	필리핀	356	204	152 14.7%
	태국	14	9	5 0.6%
	인도네시아	4	3	1 0.2%
	캄보디아	65	45	20 2.7%
	말레이시아	2	1	1 0.1%
	기타	6	4	2 0.2%
남부아시아		100	86	14 4.1%
중앙아시아		35	26	9 1.4%

구 분	합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비율)
미국	43	35	8	1.8%
러시아	15	13	2	0.6%
기 타	58	47	11	2.4%

자료 : 제주도, 2014년 주요 행정총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담당부서는 여성가족정책과이며, 최근 다문화가족이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표 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2014년 기준)

사업명	내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개소/618만원
다문화가족 및 제주거주 외국인 제주화교육	500명/100백만원
다문화가정 부부 종합검진비 지원	300가정/120백만원
다문화가정 위성안태나 설치 지원	100가구/30○백만원
다문화가족 “김만덕 해외봉사단” 운영	15명/30백만원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사업 추진	6가족 18명/30백만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시본계획 수립	60백만원
다문화가정 온라인 교육지원, 중도입국자녀 교육 지원 등	17개 사업/567백만원
아이돌보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645가정 1,897백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개소 327백만원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5개소 →10개소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과 업무보고자료, 2014

외국인을 전체로 보았을 때 외국인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4,902명, 2009년 5,250명, 2010년 5,932명, 2011년 7,128명,

2012년 8,736명을 보이고 있다.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인의 경우가 3,12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베트남 출신이 1,716명으로 나타났다.

<표 3> 외국인 국적별 등록현황 변화

연 별	총 계	일 본	미 국	중 국 ¹⁾	한국계 중국인	캐나다
2008	4,902	155	251	1,845	559	108
2009	5,250	167	273	1,660	522	120
2010	5,932	159	272	1,844	515	108
2011	7,128	172	327	2,197	545	105
2012	8,736	188	366	2,560	564	120
연 별	인도네시아	러시아	필리핀	영 국	베트남	기 타
2008	394	26	209	27	532	796
2009	376	20	275	34	684	1,119
2010	373	25	330	37	956	1,313
2011	671	28	350	131	1,254	1,348
2012	845	31	416	191	1,716	1,739

주:1) 2008년까지는 대만 포함 데이터임.

자료: 「체류외국인통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책기획관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에 대한 관용차원으로 포용하자는 논의가 있는가 하면 다문화에 대한 우려와 갈등으로 ‘반다문화(反多文化)’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¹⁾ 이러한 반다문화가 확산되기 전에 노르웨이와 테러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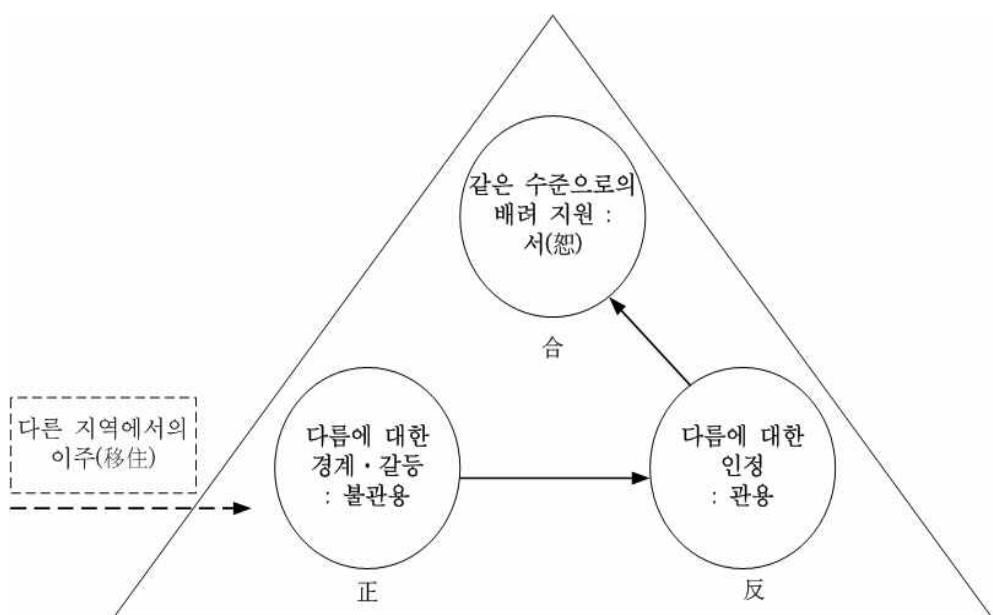
1) ‘반다문화’의 예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속어이다. 파키스타인은 ‘파퀴벌레’, 방글라데시인은 ‘방구’, 중국인은 ‘짜장’ 등 외국인들을 비하하는 속어가 나돌고 있다. 둘째, 반다문화 조직이다. 2008년 인터넷 카페인 ‘다문화 정책 반대’가 개설됐고, 2010년에는 ‘외국인 범죄 척결 시민연대’, ‘국제결혼피해센터’ 등이 만들어졌다. 셋째, 시위 등 집단행동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 시민연대는 2011년 초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찾아가 방글라데시인의 범죄근절을 촉구하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국제결혼 피해센터는 2011년 8월 KBS앞에서 집회를 열고 ‘러브인 아시아’ 제작진을 만나 국제결혼을 미화하지만 말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다섯째, 부정적 의견의 표현들이다. “외국인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어려운 한국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세금을 왜 저렇게 쓰지?” “문제가 생기면 이주여성은 피해자로, 남성은 폭력 남편, 변태 남편으로 몰리면서 매도된다.” “조선족 십장이 한국인을 부린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일자리 시장의 보충인력이 아니라 대체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연합뉴스, 2011년 9월 26일자 “다문화의 그늘” 기획기사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에 대해서 경계의 차원을 넘어서 발전의 에너지와 원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용을 베풀어야 할 상황이기도 하며, 결국에는 서로 이해하고 같이 공진(co-evolution)하는 융화된 공동체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에 대한 관용의 변증법적 지양과 발전을 통한 융화적인 공동체 사회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진행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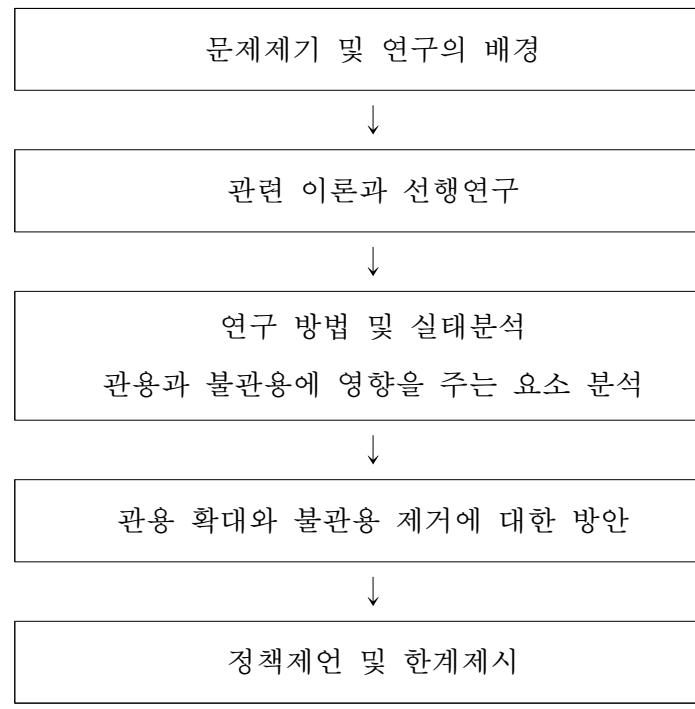
이주에 대해 1단계에서는 다름에 대해 경계하고 그러한 경계가 많아지면서 갈등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이 단계는 불관용의 단계가 될 것이다. 2단계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교육을 통해서 관용의 노력과 현상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3단계에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관조하거나 무관심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단계로 통합적 발전해야한다는 규범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최후의 과정은 ‘서(恕)’(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자는 율곡의 철학이다)의 단계이다. 그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관용과 불관용, 서(恕)에 이르는 관용의 변증법적 지양 관계도

제3절 연구의 구성과 흐름도

본 연구의 구성과 흐름도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2>와 같다. 앞에서 살펴본 제1장의 연구의 목적, 문제제기 및 연구의 배경을 시작으로 하여 제2장에서는 본 연구 전체의 틀이 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도출하기 위한 이론연구와 선행연구를 고찰할 것이다. 이 분석의 틀을 가지고 제3장에서는 관용확대를 위한 연구 방법 및 실태를 분석하고 결과를 내놓을 것이며 제4장에서는 관용 확대방안들을 찾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정책방안들이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해야 할 노력의 지향을 제시하는 정책제언과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제2장 관용관련 이론연구와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관용의 개념과 유용성

1. 관용의 개념

‘관용’은 언어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²⁾되고 같은 언어 및 사회 내에서도 정확한 내용에 대한 합의가 매우 어렵다.

먼저 관용의 한자(漢字)의 조합을 살펴볼 때, 이는 ‘느긋하다, 넓다’라는 의미의 寬과 ‘얼굴, 모습, 몸가짐’이라는 의미의 容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관용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에 대해 넓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에는 허용하고 인정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기 등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어에서 이에 해당되는 말은 톨레랑스(tolerance)로 이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과 다른 사고와 행동방식을 용인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한편 영어에서의 관용이란 tolerance와 toleration의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tolerance란 기꺼이 관대하게 보아주고자 함, 인내 혹은 자제를 의미한다. 한편 tolerarion의 동사형인 tolerate는 참고, 인정하고(관습, 활동, 행위), (사람, 종교적 분파, 견해 따위가) 존재하는 것을 방해함이나 간섭함이 없이 허용하다, 종교적인 견해 차이를 차별없이 허용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위의 정의들은 각각 강조점이나, 문화와 역사적인 경험이 서로 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정의를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용은 권위주의적인 인성, 정치, 사회체계와는 적대관계에 있다. 관용이

2) 이하 용어 정의는 이경호(1997)의 「다문화사회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과제」 연구에서 인용한 것임.

란 차이를 존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불관용은 차이를 두려워하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에 따른 차별”은 불관용의 한 유형으로 특히 권위주의적 인성에 의해 형성된다. 권위주의적 인성과 차별주의적 인성은 구분되지 않는다. 차이는 권위주의적 인성을 지닌 사람에게는 차별의 근거로 이용되지만, 민주적 원리들에 대한 신념을 지닌 사람에게는 관용의 근거가 된다.

즉 관용은 민주주의, 조화, 평화 등의 근거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관용은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인 합의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관용은 자신이 관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직면해서도 공격이나 억압보다는 평화의 원칙에 근거하여 굴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시도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관용이란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양립 불가능한 존재들 사이에서도 조화와 평화적인 공존을 이끌어내고 노력하는 심리적, 인지적 태도를 의미한다.

2. 다문화주의와 관용

집단이 관용성을 논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Halberral(1996)에 따르면 우리의 정체성은 대부분 선택의 결과가 아니며, 나아가 합리적 선택의 결과는 더욱 아니다. 예를 들어 국민적 정체성은 많은 개인에게 있어서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자기 자신이 왜 그 국적을 지닌 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 즉 집단간의 관용이 요구되는 것은 1차적으로 그 집단의 혹은 그 구성원의 ‘생존권’과 관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Williams(1996)에 따르면, 관용을 힘이 센 집단 혹은 다수가 더 힘이 약한 집단 혹은 소수에게 취하는 태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인이 많고 이슬람교인이 적은 국가에서는 기독교인이 이슬람교의 존재에 대해 관용해야하는가 혹은 참고 견뎌야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슬람교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즉 이슬람교인 입장에서 기독교인의 존재에 대해 관용해야하는 문제를 상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용의 모습이다. 그러나 관용이란 한 집단의 다른 집단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지 힘이 센 집단

과 더 약한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한 집단 혹은 신념이 사실은 그런 힘 또는 권한이 없더라도 타자를 억압하거나 쫓아낼 때야말로 “비관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용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수준,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삶의 방식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의 수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이경호, 1997). 즉 관용은 정치철학 및 정치적 실천과 관련이 있지만, 단지 국가권력의 행사 등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용을 실천한다는 것은 한 집단이 자신 이외의 다른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견디어내고 그들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다문화관련 이론

1. 다문화 사회를 보는 상반되는 두 개의 국가론적 시각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그 내용을 유형화하여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 기능주의적 시각과 갈등론적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 다문화사회를 보는 시각도 단순화하면 이렇게 두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능주의적 시각이 갖는 특징을 보면 사회를 하나의 상호 관련된 체계로 분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발전과정은 기본적으로 완만한 것이며 혁명적인 변화가 아닌 적응적인 과정이라는 전제가 있다. 대표적인 학자인 탈got 파슨스는 생물학적인 균형모형에 따라 사회체계의 기능적 측면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생물체가 손상을 입었을 때 이를 회복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원상복구 또는 항상성(homeostasis)의 경향을 가지고 있듯이 사회체계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았다.

사회현상을 동태적으로 보고, 사회변동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파악하며, 사회의 수많은 조직체는 권위를 행사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에 갈등적 이해관계가 필연적으로 내재하기 마련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갈등론적 입장이다.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기능주의적 시각과 갈등론적 시각

구 분	기능주의(균형)이론	갈등이론
사회성원 상호관계	조화, 협동, 질서가 지배함. 사회의 가치, 규범에 동의	갈등, 반목이 지배함 사회의 가치와 규범에 불일치
결속의 정도	단단히 결속됨	강압과 기만에 의해 결속이 유지됨
사회변동(발전) 유형	점진적, 평화적 개혁형태	급진적 무력을 동원한 혁명의 형태

구 분	기능주의(균형)이론	갈등이론
사회 안정의 정도	항상 안정된 사회	항상 불균형, 불안정이 지배하는 사회
대표적인 학자	파레토, 파슨즈, 모아	마르크스, 다렌돌프, 코저

자료 : 이여탁(1981), 「사회학 원론」, 법문사, p.687 ; 김광웅 외(2002), 「발전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p.114.

본 연구는 이 두 시각을 균형 있게 채용하려고 한다. 관용과 불관용의 실태를 분석할 때에는 갈등주의적 시각에서 분석을 하고, 관용이라는 매카니즘을 적용한 화합의 공동체적 국가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부분에서는 기능주의적 입장의 시각을 견지하려고 한다.

2. 다문화주의와 다양성에 대한 제반 이론들

서윤호(2012)는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여 다양성을 보는 시각에 따른 다문화주의와 관련한 이론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용광로이론이다. 기본적으로 동화주의의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 국가의 주류집단인 다수 인종이나 민족의 문화와 소수 인종이나 민족의 문화를 용광로에 모두 녹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를 통합하려는 정책이다. 용광로이론은 동화주의의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수인종과 민족이 자신의 언어, 종교, 관습 등을 포기하고 그 사회의 주류집단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함으로써 소수인종과 민족의 문화와 인권이 침해되고 주류집단과 소수인종이나 민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모자이크이론이다. 통합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입장에서 다문화정책을 추진한다. 주류집단의 문화뿐만 아니라 소수인종과 민족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소수집단의 문화들이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책이다. 모자이크이론에서는 소수인종과 민족의 문화를 허용하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론에서는 다수의 인종과 민족이 누리는 문화를 주류집단의 문화로 인정한 상태에서 부수적으로 소수인종과 민족의

문화를 허용하기 때문에 결국 소수인종과 민족의 문화는 주류집단의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주변문화로 전락하게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샐러드접시이론이다. 다문화주의에 기반을 둔 다문화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다문화주의에 따라 주류집단이 소수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존하는 정책을 말한다. 샐러드접시이론은 여러 인종, 민족, 집단의 문화를 녹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여러 인종, 민족, 집단의 문화를 나열해 놓은 것도 아니고 여러 인종, 민족, 집단의 문화를 결합하지만 각 집단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체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는 정책을 지지한다. 이 이론에 기초한 다문화정책은 문화의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여러 인종, 민족,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이 동등하게 공존하도록 소수인종과 민족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넷째, 문화상대주의이론이다. 문화는 다양하며 각 문화는 그 문화의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사회적 상황에서 이해해야 하며, 인간의 인식과 가치관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견해이다. 문화상대주의가 등장한 배경에는 과거 유럽, 즉 서구 중심의 문화이해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깔려 있다.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에 따르면 문화에는 어떤 중심도 없으며 어떤 보편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문화는 각각 특수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개별 문화사이에 가치 우열은 없다고 하는 것이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특정 집단의 특정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관점이 아닌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처한 문화적 맥락에서 보아야 하며, 특정한 설명적·이론적 틀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동감적 태도로 조심스러운 현상학적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상대주의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첫째, 각 문화 서로간의 대화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문화상대주의는 ‘아무나 옳다’는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간 충돌할 때에는 문화상대주의는 아무런 대답도 줄 수 없으며 결국에는 힘의 논리를 그대로 무기력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입장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

이상의 논의에서 제주지역에서는 ‘각각의 문화는 인정하되, 제주지역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다문화주의’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관용에 대한 분야별 경향

1. 종교적 관용의 후견주의적 성격으로써의 한계

하버마스는 16세기 이후 종교적 관용이 권위주의적이고 후견주의적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관용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다.³⁾ 프랑스 종교전쟁을 종식시켰던 낭트 칙령을 언급하면서 이는 종교적 소수자는 다수자의 권리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 관용되었던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용에서는 주체와 객체, 곧 ‘관용하는 자’(the tolerating)와 ‘관용되는 자’(the tolerated)사이의 비대칭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용과 불관용의 결정권을 독점하는 주체로서 ‘관용하는 자’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 ‘관용되는 자’의 일탈적인 관행에 베푸는 관용은 결국 시혜적인 자비(mercy) 내지 호의 (favor)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기존의 관용 개념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은 그것의 후견주의(paternalism)적 이해와 자의성(arbitrariness)에 집중 되어 있다는 것이다.⁴⁾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일방적 관용’, ‘후견주의적 관용’, ‘자의적 관용’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며, 특히 ‘관용하는 자’와 ‘관용되는 자’의 관계 해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2. 이주자(이민자)에 대한 관용으로써 수용조건

하버마스는 수용국이 이민자에게 수용을 위한 조건으로 요청할 수 있는 동화의 두 단계를 제시했다. 첫째는 헌법 원칙에 대한 동의, 즉 정치적 사회화 (political socialization)이며, 두 번째는 공동체의 특정한 삶의 양식, 관행, 관습을

3) G. Borradori, "Reconstructing Terrorism-Habermas,"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G. Borradori(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p.73 ; 정채연(2013), “현정애국주의와 관용의 한계,” 법과 사회이론학회, 「법과 사회」 제45호(2013년 12월), p.281에서 재인용.

4) J. Habermas & G. Borradori, "Fundamentalism and Terror,"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G. Borradori(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p.31 ; 정채연(2013), “현정애국주의와 관용의 한계,” 법과 사회이론학회, 「법과 사회」 제45호(2013년 12월), p.282에서 재인용.

채택하고 적응하는 단계, 즉 문화 적응(acculturation)이다.⁵⁾ 이를 통해 자신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공동체에 정치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하버마스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는 자유주의(liberalism)와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의 변증적 지양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민불복종에 대한 관용 역시 시민불복종이 제도화된 민주적 의사형성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민주적 법치국가가 지속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적 기제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⁶⁾

이러한 노력들은 기본법인 헌법에 보장되어야 하며, 헌정애국주의라는 기본정신에 기반을 둔 민족정체성이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야만 인간의 상호공존이라는 보편주의적 원칙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때 헌정애국주의는 헌법의 본질을 구성하는 규범과 가치, 곧 정당한 법을 산출하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충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문화가족의 ‘출신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공동체에 융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변증법적 공존, ‘시민불복종에 대한 관용’, ‘헌정애국주의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보편주의’등이 보장 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관용적 정부의 명과 암, 그리고 대응으로써 융화

공진성(2012)은 관용이 국가(제국 : 여기에서 제국이란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국가를 의미)의 발전에도 도움을 주지만 쇠퇴하게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다문화를 독립적으로 인정하여 분리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어떻게 융화하도록 할 것인가에 달려

5) J. Habermas, "Multiculturalism and the Liberal State," *Stanford Law Reviews*, Vol. 47, No.5, 1995, pp.849-850 ; 정채연(2013), “헌정애국주의와 관용의 한계,” 법과 사회이론학회, 「법과 사회」 제45호 (2013년 12월), p.294에서 재인용.

6) 이는 하버마스 외에 손철성(2010),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고찰,” 「윤리교육연구」, 제22집, p.231, 그리고 이상돈(2010), 「기초법학」, 법문사, p.151 등이 있다 : 정채연(2013), 전개논문, p. 289에서 재인용.

있다고 할 수 있다.

에이미 추아가 관심을 가지는 ‘관용의 이중적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로마의 경우 관용이 다양한 민족들을 품어 안으면서 세계적인 대국으로 발전하고 팍스로마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이 관용이 붕괴의 씨앗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불관용의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관용이 야기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로마의 관용 정책 덕분에 동쪽과 북쪽의 민족들이 “예전의 사회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자율성을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로마에 동화되지 않은’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 민족들, 즉 “로마가 도저히 동화시킬 수 없는 민족들, 혹은 로마가 도저히 관용할 수 없는 문화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동화시키는 데 실패”한 것이 로마 붕괴의 원인이라는 것이다.⁷⁾ 로마의 보편주의가 특수한 것의 보편화에 실패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보편적 지배의 틀을 무너뜨렸다는 주장이다.

이 선행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은 관용이 경계를 인정하고 독립적 문화를 배타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족을 해석하는 틀로 활용한다면 각각의 문화를 인정하되 우리의 ‘다문화가 공동체 내에서 융화’되고 발전의 동력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관용에 대한 교육적 측면과 법적 관용성

황미애 등(2013)등은 학생들에게 관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관용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으로는 첫째, 다문화사회는 지역적·국가적·세계적 수준에서 실재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양한 국가의 사람, 이나 다양한 문화와의 교류는 집단 상호간의 문화적 진보에 공통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한 다문화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집단간 몰이해와 대립, 그리고 다툼이나 폭력 등으로 이어질 위험성

7) 추아, 에이미, 이순희 역(2008), 「제국의 미래」, 비아북, p.99 ; 공진성(2012), “제국과 관용 : 보편주의의 정치성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인문학 연구」 제43권, pp.532-533에서 재인용.

을 가지고 있다. 소수집단을 포용하지 않을 경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넷째, 더불어 교육을 받는 다수자그룹 소속원들에게 다양한 집단과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줄 아는 ‘관용(tolerance)’의 힘을 길러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우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용성에 대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왜 관용이 필요한지, 현재의 관용의 정도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도덕적 관용, 사회문화적 관용도 중요하지만 법적 관용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꾀력하고 있다. Raphael(1988)의 글을 인용하면서 고대 스파르타에서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아이를 산에서 떨어뜨리는 일이나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만행들, 인종차별정책 등에서 보여 지는 공통점은 ‘관용되는 자’(피관용자)에게 법적 관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관용, 예컨대 도덕적 관용 혹은 사회문화적 관용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다. 즉, 학생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되어 있음에게 정치적인 세력이 약하다고 해서 피해를 주거나 심리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논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다문화 가족이나 소수집단들에게 법적으로 ‘천부적 기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과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에서도 이를 천명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5. 타자(나 외의 다른 사람) 대우의 두 원칙 : 관용과 적극적인 배려의 서(恕)

이선열(2012)은 기존의 관용의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울곡 선생의 ‘서(恕)’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관용은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함으로써 차이의 공존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 한계로써는 첫째, 인권의 침해 등과 같은 부정의의 소지가 있는 가치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둘째, 관용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불간섭이 자칫 서로에 대한 도덕적 무관심을 조장하기 쉽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용에 기초한 타자의 인정은 차이의 형식적 공

존을 넘어 타자와의 교감으로 나아가는 원칙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사회구성원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소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할 때, ‘같음’에 기반 하는 상호존중의 원칙으로 유가철학에서 논의하는 ‘서(恕)’를 제시하고 있다. 서(恕)는 내가 욕구하거나 욕구하지 않는 바를 유추함으로써 타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합당하게 타인을 대우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서(恕)는 제도나 규범의 방식으로 입법화될 수 있는 성격의 도덕률이라기보다는, 다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의지를 가진 유덕한 시민이 갖추어야 할 품성 또는 태도이다. 유가철학에서 서(恕)가 지니는 의미는 단순히 사회구성원 간의 쌍무적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호혜성을 넘어선다. 즉, 서(恕)의 핵심은 단지 타인과 호의를 교환하거나 쌍방 간에 위해(危害) 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돌보고자 하는 이타심, 혹은 타인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증진시켜주고자 하는 인도적인 덕성의 발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서(恕)는 무관심의 영역에서 내 삶에 포착되지 않고 있던 타자를 나의 관계망 안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연대감을 생성케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의 융화적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개념의 철학이 될 것이다.⁸⁾

우리는 다문화가족을 볼 때 관용이라는 차원의 다름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서(恕)의 관념으로써 ‘같음으로 공존하기 위한 배려와 후원,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예술분야에서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관용

8) 정채연(2012)는 관용의 개략적 단계화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관용 이론의 역사적 전개 방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① 무관심(indifference), ② 인정(recognition), ③ 통합(integration), ④ 포용(embrace)이다. 정진경·양계민(2005)의 논문에서는 베넷(Bennett)이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여섯 단계로 구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문화간 감수성 발달이론에 다르면 타문화에 대한 감수성은 타문화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회피하고자 하는 ① “부정”(denial)의 단계, 자신의 문화를 보다 ‘좋은 문화라고 보고 타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는 ② “방어”(defense)의 단계, 문화적 차이를 경시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문화를 보편적인 것으로 보고 타문화도 자신의 문화와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는 ③ “경시”(minimization)의 단계, 나아가 타문화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한 지위로 바라보게 되는 ④ “수용”(acceptance)의 단계,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를 자유롭게 오고가는 ⑤ “적응”(adaptation)의 단계, 자아의 정체성을 특정 문화에 가두어두지 않고 재정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⑥ “통합”(integration)의 단계로 발전해 나간다고 한다. 이러한 감수성 발달이론은 관용의 단계화의 양상과도 유사하다고 하겠다.

현미경(2012)의 논문에서는 관용을 문화예술 도시적 맥락에서 연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로 플로리다교수의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플로리다교수는 문화예술도시의 기본요소를 기술(Technique), 인재(Talent), 관용(Tolerance)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관용의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지표로 “보헤미안 지수”와 “게이 지수”를 주장한다. 이는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동인이라고 보고 있다.

보헤미안지수(Bohemian Index)는 예술가, 음악가 등과 같은 사람들의 집중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고도의 창조 자본을 가진 개인과 하이테크 기업 및 산업의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 된다⁹⁾. 그리고 게이지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게이들의 수를 통해 관용의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창조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척도로 사용된다. 게이지수가 사용되는 이유로는 주류 사회에 속하고자 하는 그들의 시도가 많은 반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특히나 높은 수준의 차별을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헤미안지수와 게이지수 등으로 나타나는 예술분야 관용의 필요성은 창조적 계급의 구성원들이 개방적이고 다양한 장소를 선호한다(Richard Florida, 2008)는 논리에서 주창된다. 다른 자원들 즉, 기술과 인재의 요소들이 동일하다면, 관용적인 분위기가 많은 곳이 다양함을 추구할 수 있는 장소로 제시되며 다양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현미경의 논문은 창조도시를 지향한 문화예술가들에 대한 관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족은 물론 취업을 위해 외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찾고 지역 공동체사회에 바르게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맥락의 연구라는 데에 차별성이 있다고 하겠다. 제주도의 다문화를 보는 시각에서도 이렇게 예술에서의 ‘관용’이 창조도시를 만드는 데에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동성애까지도 사회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성’에 대해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9) 보헤미안은 하이테크 산업(0.38), 인구성장(0.28), 고용성장(0.23)에 대하여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모두 다 0.0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다(Richard Florida, 2008:64).

7. 관용정책의 일환으로 체류 외국인의 체감안전도 제고

이봉행(2014)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불관용(무관용) 경찰활동은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둘째, 공격적인 법집행이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며, 셋째, 비재량적 법집행을 강조하고, 범죄수치가 조작될 수 있으며, 넷째,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량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활동에서 인권침해적 요소는 없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수요자인 체류외국인의 체감안전도와 정책의 적절성을 평가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지역사회와 공조하여 치안을 공동 생산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Policing Partner(경찰활동 동반자)'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셋째, 현재 경찰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외국인 도움센터, 경찰관 - 다문화가족 멘토링,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예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고, 외국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안내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찰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이주외국인의 '체감안전도의 제고'가 관용 정책의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제4절 다문화정책에 대한 외국사례와 선행연구 검토

1. 외국의 다문화정책 사례

1) 프랑스의 동화주의적 다문화정책과 무슬림 청년과의 갈등

정채연(2012)는 프랑스의 다문화정책은 동화주의로써 공화주의 국가기제와 라이시떼라는 공교육시스템에 있다고 한다. 먼저 공화주의 공민은 공화주의에 대해 ‘동의’에 기초하여 시민권을 부여받게 되며, 이민자도 공화국의 일원이 되고자 하면 동의에 바탕 하면 공민의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공화주의적 동화정책’은 프랑스 공화국의 공교육시스템인 라이시떼를 통하여 프랑스 사회에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인바, 개개인의 고유성이 포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과 2007년 무슬림 집단의 저항에서 이러한 정책의 모순점을 알게 되었다. 이민 2, 3세대들이 살고 있는 도시외국지역인 ‘방리유’(Banlieu)의 실업율이 전체 실업율 10%에 비해 33%로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나온 뒤 갈등이 시작되었다. 검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난 두 청소년이 감전사한 사고를 계기로, 무슬림이 겪어 온 현실에서의 차별에 대한 오래된 분노가 폭발하여 “2005년 프랑스 도시 외곽지역 소요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사르코지는 폭력행위에 대한 일체의 관용이 없음이라는 “제로 뜰레랑스(앵뜰레랑스 : 관용 없음)”를 발표하였다. 이 앵뜰레랑스는 표면적으로는 폭력적인 행위가 동반된 무슬림의 저항에 대한 것이지만,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앵뜰레랑스가 그 배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다.

제주도에 적용할 경우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러한 관용부족의 분위기가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여 ‘관용누적의 문화 만들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독일의 통합적 다문화정책 속의 동화주의,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경계

1950년 중반 독일은 외국인 노동자 이주 장려정책을 폈다. ‘초청노동자’, ‘일시적’이고 ‘잠정적인’현상으로 이해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은 ‘이민국가’가 아님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1973년 이주노동의 금지를 공표했지만 반대로 기존에 유입된 이주노동자들이 결과적으로 독일 사회 내에 정착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5년 이민법을 제정하면서 이민국가임을 선언하게 되었다. 터키인을 비롯한 무슬림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이민국가임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던 현실적 상황과 이주민들의 경제·사회·문화적 소외와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민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통합교육과정은 이주민에게 600시간의 독일어 과정과 민주주의 체제, 관용, 평등, 종교적 자유, 법치주의와 같은 법이념 등을 교육하기 위한 30시간의 오리엔테이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민에게 독일 사회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한 제도적 마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주민들 또한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정채연(2012)은 이를 독일의 이주민 통합정책의 기본 원칙이 ‘지원과 요구’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결국 이는 독일 사회의 특정 이주민에 대한 ‘선별과 배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독일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더 있다. 독일 사회에 아직 강하게 남아있는 민족주의적 전통,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독일 국적법 등이 그렇다. 독일 시민권을 갖기 어렵게 하여 이방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선별의 기제는 무슬림에 대해 특히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 내에서 히잡착용이 처음 문제되었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는 2006년 1월부터 소위 “무슬림 테스트”(Muslim Test)를 시민권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은 독일의 다문화정책에 한계를 들어내 주는 사안들이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독일의 이민법과 그 뒤에 무슬림을 견제하는 ‘본질에 반하는 통합정책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일시적인 효과를 보고자 하는 독일의 이민금지 정책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정책’이 될 수 없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미국의 건국이념에 포함되어 있는 자부심에 의한 통합정책과 관용

김은석(2011)은 미국에서 영국인, 에스파냐인, 폴란드인,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들의 후손들이 뒤섞여서 하강식 행사를 치루는 것을 보고 미국인의 강한 자부심과 연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다인종, 다문화가 하나로 연대하여 발전하는 국가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문화다원주의의 전형은 미국이다. 토머스 제퍼슨이 독립선언서에 명문화시킨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초로 해서 헌법의 첫 문장처럼 'We the people'을 형성한 공화국이다. 미국의 이념은 달리에 새겨진 라틴어 구호 '여럿이 모여 하나(e pluribus unum)'로 나타난다. 인종, 출신지, 종교, 성에 관계없이 공통의 문화를 갖는 관용의 국가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개인주의 인권과 같은 미국적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면서 관용이라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에서도 '다문화사회, 다인종적 사회, 통합과 융화의 사회, 관용과 치유의 사회'를 인정하고 철저하고 깊은 대책과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싱가포르 리콴유의 다인종 통합을 위한 관용

리콴유(1998)는 그의 자서전에서 싱가포르의 통합과 인종에 대한 관용을 위한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1819년 스탠포드 래플스 경에 의해서 분리주의를 유지하게 되었었다. 싱가포르에 처음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각 민족별로 거주 구역을 분리해 놓았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중국인이라고 해도 출신 지역에 따라 구획을 갈라놓기까지 했다.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영국이 싱가포르에 다른 언어를 사용한 중국인, 인도인, 말레이인 이민자들을 유입시킨 것이었다. 그리고 영국은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써 언어분리는 그래도 굳어지게 되었다.

1956년 총리로 당선되면서 리콴유는 영어학교는 중국인, 말레이인, 인도인 학생들에게 각각 모국어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중국어 학교의 학생들은 초등 과정에서 영어나 말레이어 중 하나를 선택해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말레이어 학교에서는 말레이어와 영어를 가르치고 중등과정에서 학생들이 원할 경우 중국어나 타밀어를 가르치도록 하였다. 즉 다양한 인종이 모인 싱가포르를 통합하고 관

용으로 인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덧붙여서 중국계였지만 중국어를 못했던 리콴유는 호키엔어를 집중 학습하였다. 공산주의자에게 넘겨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60년 옹 앵관의 당원 자격이 정지되자 상대당인 립 친시옹에 견줄 만큼 호키엔어를 구사하기 위하여 공부한 것이었다. 호키엔어는 만다린어의 4성 대신에 7성이 있었고, 동사, 명사, 형용사의 어법도 제각기 다른 형태였다. 37세의 나이가 되어서 배우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고 표현했다. 30분짜리 연설을 해낼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청중들이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다인종국가를 화합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제주도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다언어를 인정하고 그 에너지를 창조적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다언어를 인정하는 관용을 통해 화합’을 유도하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국의 언어에 대해 자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문화에 대한 관용이 주는 최고의 만족감을 체험할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홍순(2009)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언어만을 강요한다면 이주민의 상당수는 정신의 식민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상황에 직면한 우리들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1)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외국 연구와 경향

설리반(Sullivan et al. 1981)의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나이든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자신과 다른 부류의 사람과 집단, 그리고 그들의 가치에 대해 수용적이기 때문에 타집단에 대한 관용수준이 높은 경향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¹⁰⁾

교육수준은 지식과 배움을 통해서 서로 다른 다양한 생각들과 가치들을 이해

10) 이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사항은 임재형·김재신(2014), “한국사회의 혐오집단과 관용에 관한 경험적 분석,” 경의대학교 인류사회 재건연구원, 「OUGHTOPIA」 29권 1호의 pp.154-157의 부분을 인용·발췌함.

하게 도와줌으로써 타집단에 대한 관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개인은 한 사회가 중요시하고 지켜야할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배우고, 한편으로는 외국사람과 같이 우리사회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 집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거나 위험한 것은 아님을 배우게 된다.

소득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한 사회 내에서 갖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안정적이므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위협이 될지 모르는 타집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용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념성향이 보수적인 집단은 진보적인 이념성향의 집단에 비해 타집단과 타집단의 가치에 대해 배타적이며 타집단이 갖는 잠재적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과장되게 지각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수적일수록 관용수준이 낮을 가능성 있다.

2)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에 대한 외국 연구와 경향

몬덱과 산더스(2003)의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관용수준이 높다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만의 생각을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아무런 불평등을 받지 않는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비록 자신이 싫어하는 집단이라도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Gibson and Bingham 1982 ; Modak and Sanders 2003).

설리반과 트랜스(1999)는 사회구성원간 신뢰는 관용과 정적(+) 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대부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신뢰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며, 한 사회 내 합리적이고 정직한 사람들이 많다고 믿는 한 그 사회에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정치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다수의 권력을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llivan and Transue 1999).

제3장 관용의 실태와 욕구에 대한 분석

제1절 연구방법

1. 연구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다문화관련 관용수준의 실태분석은 물론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을 집중 면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연구와 제주지역의 다문화 관련 상황을 살펴보고 그 범위 내에서 분석할 항목들을 정리하고 분석의 틀로 제공하였다. 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관용해주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모습들

- 후견주의적 관용인지 대등한 관계로써 받아들이는 관용인지 여부
- 개인적 관용인지 공동체주의적 관용인지 여부
- 다문화가 공동체 내에서 융화되도록 하는 관용인지 여부
- 법적으로 관용이 확보되는지 여부
- 고향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활용하여 제주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여부
- 제주에서 외국인으로써 생활하기에 안전한 정도
- 이주해온 초기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관용의 정도가 어떠한지 여부
 - : 제주어를 알고 나서 보니 나빠진 것인지?
 -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알고 나서 관용의 정도가 나빠진 것인지?
아니면 좋아졌는지?
 -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좋아진 것인지?
 - 가족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런 것인지?
 - 본인이 행동을 잘해서 좋아진 것인지?

- 2) 관용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 3) 제주도주민과의 갈등 사례 여부
- 4) 다문화가족의 사회부적응의 사례
- 5) 자녀들의 사회부적응의 사례
- 6) 고향국가의 문화에 대해 존중해주는 문화 사례

2. 연구 방법론

염미경과 김규리(2008)는 구술방법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염미경 등은 다문화가족을 구성하는 외국인 부인들을 여성결혼이민자로 표현하고 있다)들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염미경 등의 연구에서 취한 방법을 정리하면서 본 연구에서도 연구의 방법론으로 참고하고자 하였다.

염미경 등은 표본표집방법은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자신을 노출하기 꺼려하는 이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접근방법이며, 총화표출하기 어렵고, 무작위로 추출하기도 어려운 표본이어서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결혼이민 여성들이 모여 있는 제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제주이주민지원센터, 중국어통역가이드협회 등을 통해서 표집대상자를 구한 뒤, 담당직원 등을 통해 소개받고 조사대상자를 점차로 확대해나가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조사자들의 연구를 위해서 적합한 특성과 요건을 지닌 대상자들을 선별하였다. 이주경로, 거주기간, 출신국가, 자녀유무, 그리고 한국국적 취득여부, 남녀별 등을 고려하여서 조사하였다.

조사현장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갖추고 인터뷰상황을 녹음하고 촬영하였으며, 녹음내용을 중심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론을 참고하여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중국인, 베트남인, 캄보디아인, 인도네시아인의 경우 결혼이주민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주민지원센터, 중국어통역협회 소개를 통해서 확보하였다. 미국인과 탈북자의 경우 지인을 통해서 접근했다.

조사항목은 분석의 틀에 있는 항목에 있는 여섯 가지의 항목을 중심으로 관용의 정도와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불관용의 정도와 불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명이 같이 방문 조사하였으며, 녹음을 통해서 정리하였다.

3. 조사일정과 대상

조사는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19일까지 이루어졌다. 면접조사는 총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표본의 특수성을 감안 거주지 인근으로 방문하여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제주 이주 및 거주 기간이 짧거나 통역을 지원하여도 설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5명의 경우는 면접 결과 자료는 제외 하였고, 최종적으로 22명의 면접결과녹취록을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제주시내, 서귀포시내, 고산 한림, 조천, 김녕 등 읍면지역 까지 제주도내 고르게 표집하였다.

최종 연구대상자 22명은 성별로는 남성이 7명, 여성이 15명이고, 출신국가별로는 중국 9명, 탈북자 4명, 베트남 3명, 캄보디아 3명, 미국 1명, 인도네시아 1명, 호주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의 제주의 이주생활여건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으나, 면접과정에서 생활지원 관련 정책적 지원에 대한 애로 또는 건의 사항을 드러내고 있는바, 제주도정책 입안을 위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대상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조사대상자 현황

이름	이주 형태	나이	성별	비고
중국 A	학원 강사	28	여	미혼
중국 B	유학생	32	여	미혼
중국 C	결혼이주	39	여	가이드
중국 D	결혼이주 (남편 중국)	40	여	가이드
중국 E	주택구입 이주	40	여	가이드
중국 F	결혼이주 (남편 중국)	43	여	가이드

이름	이주 형태	나이	성별	비고
중국 G	결혼이주	40 중반	여	가이드
중국 H	강사	27	여	미혼
중국 I	강사	29	남	이주 후 제주인과 결혼
베트남 A	결혼이주	30	여	식당근무
베트남 B	결혼이주	34	여	직장생활
베트남 C	결혼이주	26	여	농장근무
캄보디아 A	결혼이주	22	여	농장근무
캄보디아 B	취업	27	남	가축농장
캄보디아 C	취업	38	남	가축농장
인도네시아 A	취업	28	남	가축농장
미국 A	취업	28	남	강사
호주 A	강사	37	남	부부 영어강사
탈북 A	결혼이주	35	여	주부
탈북 B	결혼이주	36	여	주부. 취업
탈북 C	결혼이주	34	남	주부. 취업
탈북 D	결혼 이주	36	여	주부

제2절 관용의 실태 분석결과

1. 관용해주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모습들 분석

관용해주는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구체적으로 답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배려하는 속성이 있다고 파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용의 정도가 낮았다가 점차 제주도 사람들이 조사 대상자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중국 사람들과 미국사람, 호주인은 제주도 사람들의 관용의 정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은 전원이 육지를 경유하여 제주에 정착한 사람들로서 오히려 육지부보다 제주인의 외지인들에 대한 관용하는 수준이 높다고 답변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주자들도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답하고 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나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다소 낮게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제주어를 아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인이나 호주인도 제주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따라서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나 지역주민들의 관용의 정도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표현하고 있다. 의사소통 가능 유무가 생활 환경 적응은 물론 관용의 수준 체감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의료부문의 배려수준이 아주 좋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각종 의료서비스가 좋았고, 특히 시험관 아기 시술 같은 것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주 좋았다는 평을 하고 있다. 의료혜택관련은 설문대상자들 거의 모두 배려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적용 등은 이들 출신 국가에서 시행되지 않는 제도이기도 해서 체감하는 혜택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시간이 지나면서 관용의 정도는 좋아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자기가 제주도 문화와 자국의 문화의 차이를 느끼고, 언어를 파악하게 되

고, 제주도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들을 편하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관용의 정도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이주자들에게 현지 언어구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적응은 물론 관용수준에도 그 중요성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다섯째, 제주도에서 외국인으로써 생활하기에 편하고 안전하다는 평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제주도에 대해서 제주의 자연 풍광이 가장 좋은 이미지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제주의 의료혜택의 순이며, 제주의 치안에 대하여서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제주도가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우선 한국어와 제주어를 먼저 수준 높게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어를 어느 만큼 구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체감하는 관용의 수준도 달라진다(중국이주자 D).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다. 그리고 제주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영주권이나 국적취득 시 한국어와 제주문화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표 6> 관용해주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모습들

대상자	1. 관용해주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모습들
중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 잘 대해준다. - 도청이나 출입국관리소도 잘 해준다. - 시장에서도 외국인이라고 더 주려고 한다. -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관용의 정도가 달라지는 듯 하다. - 학원 강사여서 학원에서 잘 해준다. -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한다. -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도움 받는다. 한국어, 요리, 네일 아트 등. - 명절 후에 나눠주는 것이 인상적이고 좋다. - 밤에도 안전하다. - 중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려고 한다.
중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는 친절하다. - 제주의 관용수준은 계속 나아지는 것 같다. 다만 반대의 목소리도 그 만큼 커지고 있는 듯 하다. - 이주전보다 삶의 질 향상되었다. - 본국의 지인들에게 정당한 취업이라면 권유하고 싶다.

대상자	1. 관용해주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모습들
중국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활동영역에서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 개인적 관용도 있고, 공동체적 관용도 있다. - 다른 지역사회에 비해 융화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 법적인 관용도 있다고 생각된다. - 녹색신호 등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다. - 제주어를 쓰면 더 반겨주는 것 같다.
중국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에서 남편이랑 제주에 처음에 이사왔을 때 아주 배타적이었다. 올라갔다가 다시 온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 한국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적으로도 아주 어른스럽다. - 이웃들이 잘 해준다. - 물가면에서도 육지와 비교했을 때 괜찮다.
중국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은 한국 국적을 받았다. 부인인 대상자도 다른 부업을 할까 생각하면서 국적을 취득하고자 한다. - 중국보다 더 좋고 편하다. 친절하고 여유롭고, 남을 위하는 것이 좋다. - 관용수준도 높다. - 주변사람들이 여유롭게 살아서 경제적 압박도 적게 받는다. - 제주어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관용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진다. - 제주에 대해서 알아가는 만큼 관용은 더 커지는 것 같다.
중국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쪽에서도 제주도가 아주 좋다. 중국의 경우 의료보험에 어려워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신다. - 다문화가족의 혜택 중 의료혜택이 너무 좋다. -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을 보고 이주해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 수입도 있고, 세금도 내고 해서 차별받는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 - 한국문화를 따르려고 노력하니 한국 사람들이 인정해주려고 한다. - 시험관아기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중국에 비교했을 때 너무 좋다. - 중국보다 훨씬 좋고 편하다. 이제는 대상자도 친절함이 배이게 되었다. - 갈수록 제주사회는 좋아지는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보다 편한 것 같다. - 한국말이 되니 편하다. 심지어는 강원도 사람이냐고 묻기도 한다. - 서울에서는 경제적 압박도 있고, 사람도 빠르게 생활해서 어려웠는데 제주도는 여유롭고 편안하다. - 2009년 왔을 때보다 관용의 정도가 많이 나아졌다.

대상자	1. 관용해주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모습들
중국 G	<p>- 남편이 한국인인데 잘 해준다.</p> <p>- 이웃에게 자기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소개할 때도 딱히 불편한 것 못 느낀다.</p> <p>- 중국보다는 여기가 좋다. 여유롭고, 만족도가 높다.</p> <p>- 있는 것 다 나누어 주려고 한다. 양질의 김치도 그렇고.</p> <p>- 제주사람들에게 관용의 정도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p>
중국 H	<p>- 제주 사람들은 순수한 것 같다. 할머니들도 잘 해준다.</p> <p>- 제주 사람들은 특히 착해 보인다.</p> <p>-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아주 높은 편이다.</p> <p>- 여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오래살고 싶다.</p> <p>- 내가 중국 사람이어서 우습게 알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 학원에서도 학원생들과 중국과 한국의 장점만을 얘기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면도 아주 좋다.</p> <p>- 제주 사람들 관용수준은 아주 높다고 생각한다.</p> <p>- 관공서에도 매우 친절하다.</p> <p>- 언어도 좋아지고 갈수록 더 편해지고 있다.</p> <p>- 상해를 당해도 한국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다.</p>
중국 I	<p>- 제주 첫 여행 후 제주와 제주사람들이 친절하고 좋아 강사자격 아주</p> <p>- 제주 사람과 제주문화가 마음에 들어 제주 현지인과 결혼</p> <p>- 제주문화가 마음에 들어 관심, 제주의 관당 문화나 제사 후 음식을 나누어 먹는 등 제주문화의 우수성 인식</p> <p>- 중국의 대륙적 기질이나 제주의 다정다감한 면 융합하면 후릉할 것.</p> <p>- 제주인의 타인을 배려하고 이질적인 면 배타적으로 대하지는 않아 배려하고 수용하는 관용을 중국보다 우수해 보인다는 평.</p>
베트남 A	<p>-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잘 해준다. 서로 음식을 나누기도 한다.</p> <p>- 한국어는 면사무소에서 해준다. 국가차원에서 베트남에서 시집 온 사람들에게 잘 해준다.</p> <p>- 한국 사람이다. 그래도 고향은 베트남이다.</p> <p>- 한국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베트남과 한국사람이 섞여있는 자기를 느낀다. 그래도 제주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떠나려고하지는 않는다.</p> <p>- 음식 나누어 먹는 것이 참 좋다.</p> <p>- 식당에서 일을 6년이나 잘 하니 다른 데 가지 못하게 한다. 사장님의 베트남 사람들을 이해해주면서 더 편해졌다.</p> <p>- 제주사람들이 외국인들을 편하게 대해주고 잘 어울리려고 노력해주는 모습이 보인다.</p> <p>- 제주사람들이 이제는 제주에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다</p>

대상자	1. 관용해주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모습들
베트남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 사장님, 사모님이 다 잘해준다. - 이웃주민들이 제사음식 나누어 줄 때 매우 고맙게 느껴진다. - 관공서에서 지원해주는 것 별로 없었다. 이번에 비행기표 사줘서 베트남 다녀왔다. 매우 좋다. - 음식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너무 멀어서 쉽지 않다. - 지금 혜택에 만족한다. - 처음 집 살 때 농협에서 대출해주지 않아서 어려웠다. 부동산 대출을 받았다. - 한국이 더 나은 것 같다. - 한국어를 알수록 좋은 것 같다. 더 잘 해주는 것 같다. - 명절 때 음식 만들고, 모여서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 집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비바람 때문에 걱정이다.
베트남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사람들 외국인에게 관용해주는 편이다. - 한국어를 잘 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 - 제주문화가 좋아보여서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제주도에 계속해서 살고 싶다. -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정선생님이 집에 방문해서 한국문화를 알려주고 했다. 크게 도움 되었다. - 베트남보다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반반이다.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주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다. -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서 좋다. -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할 때 감명 받았다.
캄보디아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때문에 불편하지만 가족들은 잘 해준다. - 이웃주민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요리도 배운다. - 처음에는 말을 못해서 조금 힘이 들었지만 지금은 매우 좋다. - 한국 사람들은 배려를 잘 해주는 편이다. 특히 언니가 먼저 와 있어서 적응도 되고 편했다. - 제주에 사는 것이 좋다.
캄보디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이 아주 잘 해준다. - 사장님이 욕한 적이 없다. - 5년간 돈 벌고 귀국할 것이다. 한국사람들 부지런한 것 배우고 갈 것 같다. - 또 남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으면 그렇게 도와줄 것이다.
캄보디아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 사장님이 잘 해준다. 필요한 음식 싸주기도 하고, 생활 용품도 잘 사준다. - 사장님이 욕을 하지는 않고 가끔 잔소리는 한다. - 모습이 한국사람 같아서 그런지 차별을 느껴본 적이 없다. - 이제는 외국인 숫자가 많아지면서 제주사람들이 더 잘 대해주는 것 같다. 물론 제주사람들이 친절하기도 하다. 몇 년 전보다 훨씬 친절해졌다.

대상자	1. 관용해주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모습들
인도네시아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사람들이 모두 친절하게 대해준다. 처음 왔을 때 보다 더 좋아졌다. - 외국인을 인정해주고 같은 사람들로 생각해주는 것 같다. - 인도네시아에서 왔다고 무시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 얼굴색이 달라서 조금 다르게 보는 경우는 있다. -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친절하게 대해준다. 돈을 벌어서 귀국해서 장사할 것이다. - 제주도가 좋은 하다. - 제주친구가 있다. 친하게 지낸다. - 제주 사람이 더 잘해줬으면 하는 것이 없다. 이미 잘 해준다.
미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 느낀 적이 없다. - 제주도가 미국보다 훨씬 더 관용이 정도가 높은 것 같다. 살 기에 편하다. 제주에 더 오래 살고 싶다. -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어를 조금씩 더 잘하게 되면서 제주를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다. - 한국 사람들이 대상자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었다.
호주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에는 제주인의 대화 시 말투가 투박하고 감정 표현이 거칠어 보임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주인이 타국문화에 대하여도 비교적 개방적 관용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제주 오기 전에 폐쇄적 배타적이라는 한국인 지인이 알려준 사전지식이 무색하다. - 호주식과 제주식의 음식, 생활 양식 등의 문화를 서로 융화시키는데 장애가 없어 보인다. - 제주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하여 호기심이 많은 편이고, OPEN MIND가 느껴진다. - 특히 나이를 따져서 친구보다는 형이나 아우 또는 삼촌으로 대해서는 게 독특하다. 나를 'Uncle'이라고 칭하는 학생도 있다. 그런 것들이 위계질서나 CLOSE한 면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지위부여 또는 배려나 관용이라고 생각한다. - 물론 상대국가의 언어를 서로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커뮤니케이션도 잘되고 문화적 공감이나 관용도 매우 높아질 것이다.
탈북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는 분들이 잘 해줘서 불편함은 없다. 나이가 위인 사람들이 잘 해준다. - 일처리 시스템이 중국보다 빠르고 좋다. 도청행정처리의 경우에도 빠르다. - 제주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피해본 적은 없다.
탈북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사회에서 보다는 남한 사회가 이기적인 면이 있다. 사회 체제가 돈벌이에 더 바쁜 남한社会의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자	1. 관용해주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모습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는 생각보다 전주나 서울에 비해서 개방적이고 외부에서 온 이웃에게 더 친절하고 마음을 열어준다는 생각이 듈다. - 이웃집 경조사에 초대되고 또 경조사 준비도 같이 한 적도 있다. 북한식 냉면이나 음식을 가르쳐 달라는 신혼부부도 있었다. - 제주에는 생각보다 중국 동남아 사람들이 많고 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다. 지내는 연립의 이웃에도 동남아 출신 다문화가족이 있다. - 북한에 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육지부에서 생활 할 때보다는 사회 환경이 여유롭고 다양성이 더 느껴진다.
탈북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이 있어서 일을 하는데, 제주사람들은 외부사람들한테 호기심도 많고, 또 교류하기 좋아한다. -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면 흥미를 갖고 듣는다. 그러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남한사회나 제주와 비교하면 잘 안 믿으려 한다. -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보다 제주가 보수적이다. 웃어른 모시기나 제사 예절이 많이 엄격하다.. - 남북 언어 차이 때문에 적응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히 제주어는 알아듣기 어렵다. 제주사람들에게서 제주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중이지만 쉽지는 않다. - 이웃주민과는 쉽게 친해지고 외부에서 이주한 나를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맞다. - 제주사람들이 섬사람들로서 육지 것들이라고 하는 말도 들은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배타적이거나 북한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것은 없다.
탈북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가 섬이지만 관광지라서 그런지 많이 개방화되었다. - 3년 정도 거주하면서 본 것인데 집안며느리로서 사회를 보면 제주는 아직도 남자위주의 가부장적인 면이 많다. - 제주말은 배우기 어렵지만 정감있는 말들도 많다. - 남을 배려하는 관용의 정신도 많다. 내가 빠른 북한 억양을 써도 짜증을 내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다. - 집안에서 시부모도 나를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한다. 이것이 배려나 관용이라고 생각한다.

2. 관용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분석

관용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중 교통편 운전기사들로부터 불관용의 모습을 느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택시와 버스 기사들에게서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모든 대중 교통차량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어떤 택시기사는 친절하게 잘 물어주고 편하게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둘째, 한국말과 제주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불관용의 정도가 다르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다. 앞에서 관용부분에서도 의견이 있듯이 주로 한국말이나 제주어를 모를 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오해하거나 문화의 차이, 그리고 작은 의견의 차이에도 불관용이나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의견이 있다.

셋째, 공공기관에서 규정위주의 일률적인 행정집행이 이들 이주자들에게 불관용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제주에 온 이후에 중국에 가서 무범죄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교통편으로부터 경비까지 어려움이 많게 된다고 한다.

넷째, 문화의 차이를 모르면 불관용이라고 느껴진다고 한다. 대부분이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서양인과 동양인, 선진국과 후진국, 피부색에서 불관용이 상대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지적이 있다. 또한 아직도 한국인(제주인)의 단일민족이라는 혈통주의적 사고가 남아 있어서 다문화주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주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재도 각 나라의 말로 쉽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인종차별이나 국가별 차별 등은 없도록 제도화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존중해주고 관용해주는 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표 7> 관용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대상자	2. 관용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중국 A	- 택시기사에게 불만이다. 바가지 썩우고, 잘 안태워주고 한다.
중국 B	- 시장, 음식점 등은 친절하나 가끔 배타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렇게 언어를 쓰는 경우가 있다.

대상자	2. 관용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종에서는 있을 수 있는 정도이다. -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관용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다.
중국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는 배타적인 것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나서 제주를 떠나 대전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중국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도 없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려고 하고, 배척하려고 하기도 한다. - 대상자들은 한국 사람처럼 지내서 괜찮다. - 대상자가 볼 때도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고 예의없는 경우도 있어서 미운 것도 있다.
중국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화하거나 국적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입양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 대상자는 한국 국적이 없지만 남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서 사는 것이 편하고, 대상자는 중국 국적이 있어서 중국과 관련한 사업을 하거나 왕래할 때 좋다. - 도로명을 중국식으로 병기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다. - TV에서도 중국 자막을 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듈다. - 바로 말을 들으라고 강요하면 안 되겠지만 천천히 하면 마음을 열 것이다.
중국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권이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친정어머니도 제주에 모시고 계셔서 국적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 - 제주 말을 하면 살갑게 받아주지만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면 약간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제주문화를 배워야 하겠다하는 생각이 듈다.
중국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가 가장 걱정이었다. - 공항에서 INAD (입국불허 조치)를 당한 적이 있다. 아주 불쾌했다. 남편이 공항에 마중 나왔을 때였다. 이런 것이 불관용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 무범죄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 다시 중국에 들어갔다 와야 하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중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중국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 살 때는 예의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착하다. - 서울은 오픈적인 사회, 제주는 문화적으로 조금 폐쇄적인 느낌을 가지게 된다. - 제주도 남자들이 조금 보수적이라서 가족문화에 간혀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아줌마들의 불평이 있다.
중국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에 중국어 강사와 일하다가 제주여자와 결혼하였다. 근래에는 성격상 문화적 차이로 다툼이 많다. 다투는 경우에 위 아

대상자	2. 관용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p>래충 이웃들이 화해시켜주기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조사 관련, 처가, 본가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때문에 다툼이 생길때도 있다. - 부부간 불화문제로 다문화 지원시설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 이런 불화를 극복, 이겨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고 서로 노력한다.
베트남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 와서 말을 못하니 할머니와 다툴 때, 그때가 힘들었다.
베트남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남편은 아파서 염증이 계속 생기고, 시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서 맞벌이하면서 꼬마를 봐야 해서 힘들다. 지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 처음에는 남편이랑 문화적인 차이로 다투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윗사람에게 식사를 먼저 대접하는 것은 제주의 풍습이고 좋은 일이지만 베트남에는 없기 때문이다. - 육지보다 월급작고,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더 적게 주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 잘 했을 때는 문제가 없으나 잘 못하면 왜 그 따위냐고 직장에서 기분나쁘게 지적한다. 그러면 대상자가 화는 내지않지만 눈물이 나오고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베트남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가 나를 무시했던 적은 없는 것 같고 언어에 대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캄보디아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언어를 배우고 서로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좋겠다. - 캄보디아에서 어릴 때 놀았던 이야기 풍습 등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다. - 제주 사람들 잘 해주기는 하지만 남의 나라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
캄보디아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끔 택시에서 저는 한국말을 하고 싶어서 말하지만 택시 기사가 아무 말이 없어요. 아마 캄보디아가 못사는 나라 사람이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해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다. 어떤 택시는 친절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인도네시아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에서 술을 먹거나 그럴 때 제주 사람에게는 뭐라 하지는 않지만 외국인이라고 육, 비아냥 등 뭐라고 하거나 그런 적이 있다. - 가끔 발음이 틀리거나 그럴 때 외국인이라고 무시하는 듯한 조금 안좋게 보거나 그런 것도 있었다.
미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배우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영어할 수 없는 한국인 친구 만나는 것이 어렵다. - 백인한테는 잘 대해주고 관용수준이 높지만 흑인이나 동남아

대상자	2. 관용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p>인한테는 차별이라기보다는 냉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우주의, 민족주의 같은 것이 관용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배타주의로 흐르고 있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
호주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주민들은 제주인의 자긍심(pride)가 강한 것 같다. - 학생들이 토론 중에 한국은 유일한 단일민족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독특한 지역적 특색을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한국인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은 거슬린다. - 단일 민족이라는 말이 그 자긍심은 아니다.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해준 적도 있다. - 때에 따라서는 제주의 행동 방식을 강요하기도 한다.
탈북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는 인사해도 잘 안받아주더니 10번 정도 하니 받아주었다. - 제주사람들 외국인들에 대해서 꺼려하는 경향 많다. - 제주사람들 자기네끼리만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다. - 제주사람들 처음에는 배타적이었다고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괜찮다. - 아직은 제주어를 잘 몰라서 제주사람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탈북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사람들은 개방적이기는 하지만, 초면에는 생각을 감추어서 접근이 어렵다. 친해지려고 여러 번 노력해야만 가능하다. - 제주인들끼리 깊은 얘기를 주고받다가도 외부인이 대화 중에 제주관련된 사항은 화제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작은 도련님과 시누이와 다툼이 생겼는데 북한식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식의 말투가 분노를 느끼게 된다.
탈북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사람들 친,인척 관계는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제주의 관당문화에 공감이 가기도 한다. 이웃끼리도 삼촌이라는 호칭을 하지만 외지인에게도 삼촌이라거나 하는 친근함을 없어 보인다.
탈북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생활중 시모와의 갈등이 많은데, 제주출신이 아닌 북한 출신이라서 무시하는 언사도 있어서 섭섭하다. - 북한은 제주보다 못하다는 식의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싫다.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못할지도 모르지만, 북쪽 문화나 음식, 생활방법이 뒤처지는 것은 없다. 이런 면에서는 제주의 배타성도 있다.

3. 제주도주민과의 갈등사례 여부 분석

제주도주민과의 갈등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형태인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갈등이 표면화되거나 표출되는 정도는 많지 않다. 다만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차이와 개인 간의 의견차이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 이주민 개인적 사고나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들로서 역시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는 관용의 문화가 뿌리내릴 때 극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결혼이주의 경우 가족간, 또는 고부간의 갈등이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셋째, 문화의 차이가 갈등으로 갈 수 있겠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중국의 충고문화는 일반적이지만 제주도에서 충고를 하면 싫어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것도 갈등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유교문화가 동아시아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어른을 공경하여 우선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갈등을 느낄 수 있었다. 제주도의 저녁 음주문화가 또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불안을 조장하거나 추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갈등의 소지가 된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에게는 음주문화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결혼이주의 경우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교문화에 대해서 이해시킬 필요가 있겠다. 다음으로는 음주문화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음주문화를 정당화하기보다는 서양이나 동아시아 사람들의 음주문화를 이해하고 제주도민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표 8> 제주도주민과의 갈등사례 여부

대상자	3. 제주도주민과의 갈등사례 여부
중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에서는 가르치는 것(충고, 조언)을 괜찮다고 보는 데 한국은 안 좋게 봐서 처음에는 놀랐다.- 시집오는 중국 사람들의 경우, 한국 문화를 잘 몰라서 갈등

대상자	3. 제주도주민과의 갈등사례 여부
	하는 경우를 본다. 제사라는 것을 잘 몰라서 어려워하고 시어머니랑 갈등도 있다.
중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과의 소통부재가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 이방인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지역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중국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언어가 조금 약해서 어려워하는 것 같다. 교육 프로그램, 취업연계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사람 우선 고용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해 같은 곳에서는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중국 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는 제주도 사람을 섬놈이라고 비판하다가 이제는 중국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제주사람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외국인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중국 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디서 도와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 버스가 너무 과속 거칠게 달린다. 교통편 종사자들이 외국인에게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진다. - 한국인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밤 10시에 퇴근할 때 술에 취한 분들이 많아서 조금 무서울 때가 있다. 그래도 경찰이 잘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중국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간의 갈등의 경우, 이웃들이 많이 도와주는데 가족들은 외국인이라서 문화가 달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주 문화 중심으로 타협하고 순응해야 한다는 태도는 문제이다. - 제주어가 서툴러서 개인과외를 받고 있다. 언어소통문제로 오해를 산적도 있다. - 언어강사할 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급여도 적게 주고, 시장에서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가격을 비싸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
베트남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갈등이 있다. 남편은 집에 거의 없다. 그래서 갈등을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 - 시부모와 떨어져 살고 나서는 문제가 많이 풀렸다.
베트남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하고 다른 것은 배우려고 한다. 남편이 계속 말한다. 베트남 사람이라고 육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따르려고 하는 편이다.
캄보디아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사람과 4년동안 한번도 다퉁본 적이 없다. 제주사람들 착하고 나쁜 사람이 없다.
인도네시아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사람과 다투 적은 없다.

대상자	3. 제주도주민과의 갈등사례 여부
미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술 마신 사람이 미국사람이어서 만져보고 싶다고 해서 성적 추행을 당한 기분이 든 적이 있었다. - 제주사람과 다투본 적은 없다. - 제주문화가 이해안되는 것이 많다. - 한국 사회가 발전하려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구성원으로 인정해주고 다양화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더욱 제주를 발전시키고 활력을 줄 것이다.
호주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식 시 술잔 돌리기를 거부하자 모두 싫어하고 분위기를 끌다는 인상을 받았다. - 또 노래방(Singing Cafe)에서 기분과 무조건 노래를 강요하여 어색하다. - 나이별 성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엄격한 계급(Class)가 있어 보인다. - 제주인과 다투어 본적은 없지만 문화에 대한 토론시 제주의 문화적 단점일 수 있는 얘기를 하면 모두 싫어한다. - 제주관련 건을 건전한 토론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탈북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사람들이 형님으로써 이주해오는 외국인들에게 잘 해줘야 한다. 그래야 제주가 발전할 수 있다. - 제주사회가 담합이 잘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협회가 잘 되는 것 같다. 참석하지 않으면 제약이 있으니까 참여도 잘 하는 것 같다. - 이웃들 간에 불쾌한 적은 없다. 행복한 기억밖에 없다.
탈북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사 자격을 받고 제주사람과 동업으로 개업을 준비하다가 북한식의 억양과 유행을 말하다가 동업을 포기하였다. - 시누이와의 다툼이 심각한데 북한에서와는 달리 남편이 역할을 안 하고 중립만 지키려고 한다.
탈북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을 하였을 때 차별이 있어서 이방인처럼 대하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
탈북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 잔돈을 안주려고 하거나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험도 있다. - 오일 시장에서도 북한 억양이어서 그런지 차별을 느꼈다.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팔려고 해서 물건구입을 포기했다.

4. 다문화가족의 사회부적응의 사례 분석

다문화가족의 사회부적응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족 전체가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부정적인 것 보다는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가족차원에서 부적응하거나 불관용하는 경우는 없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온 경우는 조금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고 한다.

둘째, 북한 출신자들은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역할 혼란이 많았다. 이들은 또한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의 문화차이, 특히 가족구성원의 변화와 역할 변화, 언어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많이 지적한다.

셋째,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한국어는 물론 제주어를 아는 정도가 가족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에서는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다문화가족을 관용으로 품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에 연대하여 참여하는 것이라는 제안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나, 여타 후진국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이주해온 다문화가족에게 폄하하는 눈치를 주지 않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들의 다양성을 활용한 제주발전에 공동협력주체라고 생각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표 9> 다문화가족의 사회부적응 사례

대상자	4. 다문화가족의 사회부적응 사례
중국 B	- 언어소통과 문화소통의 문제로 부적응하는 사례를 가끔 본다. - 어린 나이에 오면 여러 가지로 빨리 적응하는 것 같다.
중국 C	- 제주사람, 외국사람 구분이 필요없다. 제주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중국 D	- 차별받거나 한 적은 없다.

대상자	4. 다문화가족의 사회부적응 사례
중국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내는 나에 대한 이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에 노력하지 않는다. 상호 노력해야만 더욱 문화적 이해가 빠를 것이다. - 한국(제주)은 다문화 지원제도 만족스럽다. - 문화차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제주식 송편, 자리젓갈 등 음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중국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조금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베트남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말을 더 잘 하고 싶고, 풍습도 익히고 싶다.
베트남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은 우리 가족에게 점점 잘 해주는 것 같다. -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웃하고 지내고 있다. 이웃들과 친척들이 잘 도와준다.
캄보디아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도 있고, 캄보디아라고 조금 눈치 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탈북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가이드를 희망하는데 시험에서 북한 억양 때문에 손해 본경험이 있다 고 믿는다.
탈북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북의 교육이 승배위주인데, 남한은 교육내용이 학교서나 사회에서나 다양하다. - 남한 말과 북한말은 많이 다르다. 제주에는 외래어가 너무 남발하여 알아듣기 어렵다. - 언어 문제는 어떤 경우는 남편과의 대화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도 있다 - 사회에서는 직업이나 다른 선택의 기회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탈북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사회에서 제사 시 만들어지는 음식준비, 또는 무당을 고용하여 굿하기 위한 음식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해가 힘들었다.

5. 자녀들의 사회부적응의 사례 분석

자녀들의 사회부적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가족의 부적응사례가 극히 적었듯이 자녀의 부적응 사례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들의 관용차원에서 부적응으로 어려웠던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다만 언어의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조금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어와 제주어를 빨리 습득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불관용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언어 교육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는 숙제를 던져준다.

셋째,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어머니의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머니 고향의 언어도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

특히, 새터민들에게 서로 다른 체제에서 오는 정체감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자녀들을 위해 한국어, 제주어, 그리고 어머니 고향의 언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0>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사회부적응의 사례

대상자	5. 자녀들의 사회부적응의 사례
중국 D	- 아이를 여기서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중국 F	- 아이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중국 G	- 아들이 중국에 있어서 영주권이면 족할 것 같다. 아들이 중국어 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베트남 A	- 아이도 낳고 해서 행복하다.
베트남 B	- 아이들은 잘 적응 하지만 베트남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 아이 유치원비 지원해줘서 너무 고맙다. - 아이들의 언어교육에 조금 더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탈북 B	- 아이들 교육이 북한에서는 방과 후는 주로 자유놀이인데 여기는 영어 컴퓨터 교육 등 너무 다양하여 아이의 학습지도가 어렵다
탈북 C	- 아이가 북한 역양을 배울까봐 일부러 제주어나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한다 - 영어나 컴퓨터 관련 교육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본인 서툴러 도와 줄 수 없다. - 모임장소도 고향에 없는 커피숍위주인데 비생산적인 것 같다.

6. 고향국가의 문화에 대해 존중해주는 문화사례 분석

제주도민들이 이주민들 본 국가에 대해 존중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내용은 구체적인 관용의 정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내용을 묻기 위해 고향후배들이 제주에 오겠다고 하는 경우에 추천할 것인가 하는 맥락에서 질문을 하였다. 대부분이 고향후배들에게 추천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다소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연로한 어르신들의 여행이나 취업 가능한 경우 등에게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을 추천하지만 불법취업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의견을 보이고 있다.

둘째, 중국인들의 경우 중국문화와 한국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활용하면 제주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주오신 분들의 문화를 연구하여 다양성을 포용한 결과 제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표 11> 고향국가의 문화에 대해 존중해주는 문화사례

대상자	6. 고향국가의 문화에 대해 존중해주는 문화사례
중국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사람들의 대인적인 면(크게 생각하는 점)과 제주의 다정다감한 면이 만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 한 적도 있다.
중국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향국가의 문화와 언어를 활용하여 제주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다.- 문화, 음식 등 여러 가지로 중국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중국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사람이라고 흉보는 일은 없다.- 중국어 가이드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다.- 고향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주도가 좋다고.
중국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사람들이 갈수록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고 관용하려는 경향은 늘어나는 것 같다.- 지인들이 여기 제주에 와서 살겠다면 추천하겠다.

대상자	6. 고향국가의 문화에 대해 존중해주는 문화사례
중국 F	- 제주에 이주해오겠다고 하면 동감하겠다.
중국 G	- 생활력이 있는 사람, 밥벌이가 되는 사람에게는 추천하고 싶고, 불법 이주하는 사람은 찾아내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중국문화에 관심도 많고, 주민들은 인정해주려고 한다. - 중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채팅을 하면서도 제주가 좋다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 H	- 연로한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만 젊은 분들에게는 제주에서의 취업 등의 어려움 문제로 관광정도만을 추천하고 싶다.
중국 I	- 제주인과의 결혼은 권장하고 싶지만, 먼저 제주어를 배운 후 충분한 교제기간을 거쳐서 결혼 이주해야 한다. - 가게를 내서 상업을 시작했는데 중국인의 상술과 제주인의 다정한 감정이 어울어져 장사가 잘되는 것 같다.
베트남 A	- 고향 후배들에게 오라고 소개는 안하고 싶다. 대상자는 잘 살고 있지만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B	- 남편은 베트남을 이해해주려고 노력한다. - 굳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쉽지 않다.
베트남 C	- 베트남 후배들이 온다고 하면 추천해주고 싶다.
캄보디아 A	- 고향친구들에게 제주에 살라고 권유하고 싶다. 실제 권유 경험도 있다.
캄보디아 B	- 동생이 온다고 하면 같이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 제주사람들이 캄보디아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
캄보디아 C	- 캄보디아 음식 차모수어라는 당면 무침 같은 음식을 소개하고 싶지만 요리 솜씨가 없어서 못한다. - 기회가 되면 캄보디아 음식점을 개업해 보고싶다.
인도네시아 A	- 다른 인도네시아 인들이 제주로 이주해 올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주해 오라고 하고 싶지만 오는 것이 쉽지는 않다.
탈북B	- 나이 드신 부모님과 분가를 주장하는 가족일원과 대가족이 동거하는 북한 가족 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주장대로 시부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데 자신의 문화를 반영하였다. - 가족이나 이웃에서 북한식 음식에 대하여 많이 존중하여 주어서 북한 음식을 준비하여 같이 식사를 즐긴다. (고향향수를 달랠 수 있다)
탈북C	- 고향 생활방식의 근검절약하는 습관과 부지런하고 솔직한 생활습관은 모두들 좋아하는 것 같다. - 제주식의 조상 제사 모시는 것은 북쪽과도 비슷한 점이 많다.
탈북D	-북한식 음식문화는 존중 받는다 - 이북이 여기보다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고 음식준비하면 모두들 좋아하는 것 같다.

7. 관용과 불관용 분석의 합의

다문화가족과 취업이주, 혹은 북한이탈 새터민에 대해서 관용과 불관용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합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민들은 관용적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배타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정기간을 생활하다보면 관용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배타적이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처럼 외국인의 이주해오는 현상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더라도 관용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아는가가 관용적이라고 느끼는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제주어를 알면 주변 이웃들과 의사소통의 늘고 동감해주는 정도가 많아지면서 관용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어는 물론 제주어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문화의 차이에 대한 해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문화의 차이 그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이 초기에는 편하하는 것으로 느끼는 일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고, 관용정도가 많다는 것을 느낀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화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인들이 제주에 대하여 설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정규교육 과정에서 제주인이 제주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쇼핑할 때 불관용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택시, 혹은 버스, 혹은 옷을 살 때 가끔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들이 마을 공동체에서는 불관용을 느끼지 못하지만 서비스영역과 쇼핑 등의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을 느끼는 점이 있었다. 이문제의 중요성은 이들 외국인 이주자들에게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불관용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주산업의 중요 근간인 관광 등 서비스업에 종사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가난한 후진국의 외국인들에게 펼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었다.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등에서 이주해온 분들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또 다른 복수의 백인 영어강사들도 직접 목도한 바를 지적하고 있어서 추론할 수 있다.

여섯째, 다문화가족이나 자녀들이 사회에 대해서 느끼는 불관용으로 인한 부적응 사례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간의 갈등과 같은 가족내의 갈등이나 불관용 등의 문제는 있지만 제주사회에서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주는 불관용 등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주도를 고향 국가 친지나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만 이주해오는 과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못하며, 또한 불법이주의 의사가 있는 경우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제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제주도가 불법 체류할 수 있을 만큼 허술하지는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제4장 관용의 확대 방안

제1절 초기 불관용의 단계에서의 대응

1. 지역 다문화에 대한 포용의 철학 정립

본 연구의 이론연구 부분에서 다문화주의를 접근하는 이론으로 용광로, 모자이크이론, 샐러드접시이론, 문화상대주의론 등을 살펴본 바 있다. 여기서 제주지역에서는 어떠한 맥락으로 다문화에 대해 포용해나갈 것인가 하는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

특정한 하나의 이론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다문화 초기라 할 수 있는 시기, 다양한 논의의 활성화기, 안정기 등에 따라 다른 맥락을 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문화상대주의, 다양한 논의의 시기에는 모자이크이론, 안정기에는 샐러드접시이론 등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반다문화(反多文化)에 대한 연구와 대응전략 수립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과 시민사회의 모임 등을 통해서 반다문화의 사례들을 읽어내어서 공격적인 반다문화로 진행되지 않게 대응해야 하며, 교훈으로 삼아 미래의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다문화 모임이나 활동들은 다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다문화의 부정적인 현상들을 개선해서 미래사회의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다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이 확대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 사회가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전제는 관용의 정신으로 포용하는 전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2절 다름에 대한 인정과 관용 단계의 대응

1. 다문화시대 기능주의적 맥락의 새마을 운동 확대

70년대 경제적인 분야는 물론 사회전체적인 분위기를 기능주의적 맥락에서 궁정화시킨 것이 새마을 운동이었다고 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1세기에는 다문화사회에서도 기능주의적 접근이 가능한 관용과 협력 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새로운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의 주인공들인 이주민과 함께 세계 최고의 다문화도시, 제주를 만드는 운동이 필요하다. 다문화사회에 이주해온 외지인들의 에너지를 우리지역의 발전 동력으로 활용하면서 서로가 협동하고, 조화롭게 활동하며, 기존 우리가 만든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한다.

2. 법적 관용의 확보에 대해 노력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에 대해 관용의 노력은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보장하지 않을 때 많은 한계와 제약에 그칠 수 있다. 천부적 기본권은 보장되나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점차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법규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같다.” 혹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롤스가 주장하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는 맥락에서 법적인 규정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제3절 같은 수준으로의 배려 지원하는 서(恕)의 단계와 대응

1. ‘관용하는 자’와 ‘관용되는 자’의 구분과 경계 허물기

다문화사회가 안정기로 접어들면 관용하는 자와 관용되는 자를 구분하는 후견주의적 관용에서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주체가 되어 같은 수준으로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대안이다.

예를 들어 ‘대표관료제’의 맥락에서 한 국가나 민족을 구성하는 외국인이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지방정부의 공무원을 또한 그 일정비율만큼 채용해주는 제도 등을 도입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제주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2. 관용누적 문화운동을 통한 사회 안정 유도

외국의 사례에서 동화주의적 맥락에서 선별과 배제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정책은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았다. 사전에 적극적인 관용누적의 정책들이 부족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는 관용누적 문화 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다문화초기인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운동을 펼쳐서 외국인에 대한 관용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족내의 청소년, 다문화가족에서의 구성원 등에 대해서도 관용누적 문화운동을 펼쳐서 안정적인 사회가 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제4절 관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성 극복 대응

1. 관용이 가져올 수 있는 이중적 효과에 대한 대응

관용이 주는 부정적 측면에서 관용이 지역분리의 문제나 통합의 저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로마의 교훈을 받아들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이나 공간적인 분리와 포용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 제주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지역의 경우 중국 자본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다”

“어느 지역은 중국인 거주지역이다”라는 등의 형태로 제주지역의 분리와 독립 형태의 공간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절대적 대명제를 견지해야 한다.

2. 창조도시 조성으로 궁정화 유도

플로리다 교수가 논하는 창조도시 맥락에서 다문화의 역량을 모아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향후에는 제주도가 현재의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외국인 외에도 관광객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유입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화한 기후, 천혜의 자연적 풍광 등으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등과 같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개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많은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성을 궁정의 방향으로 승화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창조도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제언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시사점들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와 제주어를 먼저 수준 높게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국어(제주어)와 더불어 제주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제주도에서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 시에는 제주지역 문화를 포함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자격시험을 보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제주문화안의 제주인으로서 살아가야하기 때문에 제주에 대한 지식이 일정수준이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의 차이를 극복해주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교육을 위한 교재를 각 나라의 언어로 쉽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인종차별이나 국가별 차별 등은 없도록 제도화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출신국가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존중해주고 관용해주는 문화와 제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북한이든,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또는 백인 흑인 아시아 등 출신지와는 상관없이 서로 다음과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해주는 문화가 새롭게 꽂피워야 한다.

다섯째, 교통 등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양성을 품는 도시문화의 소중한 가치에 대하여 교육을 통하여 구성원이 공유하고, 부정적인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결혼이주의 경우 고부 간,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오래된 가치인 유교문화에 대해서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을 우선 모셔야하고, 이웃의 어르신들의 말도 겸손하게 들어야 하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음주문화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음주문화를 정당화하기 보다는 서양이나 동아시아 등 각 나라 사람들의 음주문화를 이해하고 제주도민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후진국의 결혼이주자나 취업 노동자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알려야 할 것이다.

여덟째, 후진국이나 가난한 나라에서 이주해온 다문화가족에게 편하하는 등의 눈치를 주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 제도가 필요하다.

아홉째, 제주도 사람으로서 하나가 되어 제주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들의 다양성을 활용한 제주발전에 공동협력주체라고 생각해주는 의식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사료된다.

열 번째, 자녀들을 위해 한국어, 제주어, 그리고 어머니 고향의 언어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주에서의 적용과 가정에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열한 번째, 우리 제주지역사회에 어엿한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탈북출신의 새터민들에게도 이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한다. 아직도 남북한 간의 대결구도나 정치, 경제, 문화의 우월성 비교에 치중해서는 아니 된다.

열두 번째, 이주오신 분들의 문화를 연구하여 다양성을 포용한 결과 제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차원에서 외국에 지역연구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외국에서 이주해온 분들에게서 자국의 문화와 정보를 통해서 우리나라 혹은 제주도가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열세 번째, 이주민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게 어떤 집합장소 같은 것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조사대상자 중국 C씨의 제안)

열네 번째, TV에서도 중국 자막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다.(조사대상자 중국 E씨의 제안). 지역방송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교통방송 등에서 외국어는 물론 외국어 자막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제2절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 북한에서 탈북한 새터민을 집중 면접하여 제주도에서 느끼는 불관용 문제 실태를 분석하고 이의 해결과 관용의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문화와 관련된 논의, 그리고 관용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하여 제주도의 관용과 불관용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찾아 정리하였다.

- 1) 관용해주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 모습들
- 2) 관용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
- 3) 제주도주민과의 갈등 사례 여부
- 4) 다문화가족의 사회부적응의 사례
- 5) 자녀들의 사회부적응의 사례
- 6) 고향국가의 문화에 대해 존중해주는 문화사례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제주도민들은 개방적, 관용적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제주어를 어느 정도 구사 가능한가가 관용적의 수준정도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문화의 차이에 대한 해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쇼핑할 때 불관용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점은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가난한 후진국의 외국인들에게 편하게 경향이 있다는 추론을 할 수 있었다. 관용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주도를 고향 국가 친지나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불관용을 제거하고 관용의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단계별로 제안하였다.

첫째, 초기 불관용의 단계에서의 대응이다. 먼저, 지역 다문화에 대한 포용의 철학 정립이 필요하다. 동시에 반다문화(反多文化)에 대한 연구와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서로 다른에 대한 인정과 관용 단계의 대응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시대 기능주의적 맥락의 새마을 운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 다문화정책의 수준은 법적, 제도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같은 수준으로의 배려 지원하는 서(恕)의 단계와 대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하는 자’와 ‘관용되는 자’의 구분과 경계 허물기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관용누적 문화운동을 통한 사회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관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성 극복 대응도 필요하다. 먼저 관용이 가져올 수 있는 이중적 효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창조도시 조성으로 다문화상황을 긍정화로 유도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다섯 째, 국제 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도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관용의 기본 철학적 가치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최현(2014)에 의하면, 제주도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시민의 육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신념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그들 나름의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다시 말해 차이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다. 다문화시민의 기본적인 소양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관용성에 있다. 김리카 역시 다문화 교육의 목적이 다른 문화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방식, 그리고 집단 스스로가 자신을 대변해야 할 필요성 등을 인정하는 것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관용성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는 다른 문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존중할 만한 역사나 배경을 가진 타자에 대해서는 관용성과 존경심을 갖기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최현, 2014: 97)

무릇 제주의 역사가 자연환경적인 고립의 섬으로 인하여 제주이외 것들에 대한 배타적인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제는 다양한 출신지를 갖는 이주민들이 제주에 이주해 와서 그들의 다양성이 제주발전의 한몫을 담당하도록 하

기위한 관용철학의 일상화와 제도화는 절대적인 과제라고 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용이라는 차원의 다름에 대한 인정과 이해를 넘어서는 서(恕)의 관념으로써 '같음으로 공존하기 위한 배려와 후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관용의 모습과 불관용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여 제주지역 소수의 표본에 대한 집중면접의 방식을 택했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의 부적응 사례와 자녀의 부적응 사례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후견적인 관용인지, 대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용인지, 개인적인 관용인지, 공동체주의적 관용인지, 공동체내에서 용화되도록 하는 관용인지, 법적으로 확보된 관용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척도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 참고문헌

1. 인용 문헌

- 공진성(2012), “제국과 관용 : 보편주의의 정치성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인문학 연구」 제43권.
- 김광웅 외(2002), 「발전행정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김은석(2011), “제4장 다문화 사회와 역사 이해,” 학지사, 「지역사회와 다문화교육」, 학지사.
- 리콴유(1998), 「리콴유 자서전」, 문학사상사.
- 서운호(2012),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다문화법제의 기본개념 분석,”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3권.
- 염미경·김규리(2008), 「제주사회의 여성결혼 이민자들」
- 이경호(1997), 다문화사회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과제,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25권.
- 이봉행(2014), “서울거주 외국인 밀집지역내 범죄통제방안에 대한 연구 - 깨어진 창 이론, 무관용 경찰활동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55호.
- 이선열(2012), “타자 대우의 두 원칙 : 관용과 서(恕),” 울곡학회, 「울곡사상연구」 제24집.
- 임재형·김재신(2014), “한국사회의 혐오집단과 관용에 관한 경험적 분석,” 경의대학교 인류사회 재건연구원, 「OUGHTOPIA」 29권 1호
- 정채연(2012), “유럽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관용의 한계 - 프랑스 라이시 폐와 독일의 민주적 헌정주의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36권 1호.
- 정채연, “헌정애국주의와 관용의 한계,” 법과 사회이론학회, 「법과 사회」 제45호 (2013년 12월)
- 최현, 제주의 이주민과 다문화정책(2014.10), 「2014 한일공동세미나 마이너리티

와 이민」 세미나 자료집, 제주대학교 재일 제주인센터.

현미경(2012), “제주문화예술도시 발전을 위한 “관용” 인식수준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황경수·오윤정·고관우(2014),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이주민 실태조사 및 정착 지원 방안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황미애·이수진·박성혁(2013), “외국인에 대한 중등학생의 법적관용성 - 다문화 법교육에의 합의,”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제45권 1호(2013년 3월).

2. 재인용 문헌

박홍순(2009), “이주민의 정체성과 포스트콜로니얼 대안,”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엮음,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교육」, 동녘.

손철성(2010),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고찰,” 「윤리교육연구」, 제22집.

이상돈(2010), 「기초법학」, 법문사.

이여탁(1981), 「사회학 원론」, 법문사.

정진경·양계민(2005), “문화간 훈련의 이론과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제24권 제1호.

최현, 제주의 이주민과 다문화정책(2014.10), 「2014 한일공동세미나 마이너리티와 이민」 세미나 자료집,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추아, 에이미, 이순희 역(2008), 「제국의 미래」, 비아북.

Kymlicka, Will(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New York: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2004)."Multicultural States and Intercultural Citizens." *Theory and Reserch in Education*, 192) 147-169.

G. Borradori, "Reconstructing Terrorism-Habermas,"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G. Borradori(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J. Habermas, "Multiculturalism and the Liberal State," *Stanford Law Reviews*, Vol. 47, No.5, 1995.

J. Habermas & G. Borradori, "Fundamentalism and Terror,"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G. Borradori(ed.)).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Haberral M. "Anotomy, Toleration, and Group Rights: A Response to Will Kymlicka", in Heyd D. ed. Toleration - An Elusive Virtue -, 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Raphael, D.D., "The intolerable," In S. Mendus(Ed.), *Justifying tolerance*(pp.137-153),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Richard Florida(2008), 이종호·서민철·이원호 옮김, 「도시와 창조계급」, 푸른길

Williams B. "Toleration: An Impossible Virtue?" in Heyd D. ed, Toleration-An Elusive Virtue-, 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3. 기타자료

연합뉴스, 2011년 9월 26일자, “다문화의 그늘”

한국일보, 2015년 7월4일자, “다문화 2세들 이유 있는 방황”

<부록 1>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소관부서 : 여성가족정책과]

제정 2008. 4. 2 조례 제356호

일부개정 2012. 1. 11 조례 제8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기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2조(기본이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제주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

1. “다문화가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2. “다문화가족 지원”이라 함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

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취하는 일체의 제도 또는 조치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등” 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다. 위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다가 혼인관계가 해소된 외국인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 등에 필요한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제주자치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청회 개최 등)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는 매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개정 2012.1.11>

제9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도지사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
5.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및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1>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과 자치행정국장과 보건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이 있는 자로서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3. 거주이민자 중 결혼이민자 당사자 또는 단체 관계자

4.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으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신청된 자

5. 도지사는 제2호와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추천, 신청일자를 공고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의 추천 또는 도민으로부터의 신청을 받은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자를 위촉한다.

④ 정책위원회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11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5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서 호선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도 소속 공무원 제외)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행·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

제17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민과 결혼이민자가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문·방송 또는 통신 관련사업자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돋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제18조(기본소양 교육)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제주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언어교육, 사회적응교육, 기술습득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속해 있는 사업장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사회통합교육 등을 실시한다.

③ 제1항·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지원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2.1.11]

제19조 삭제<2012.1.11>

제20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내의 부부간 및 세대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 교육, 부모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2012.1.11>

제22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3조제4호의 결혼이민자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결혼이민자가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등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를 입증하는데 있어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대한민국의 법률·의료체계 및 정보에 대한 미숙 등으로 인하여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사실확인, 법률상담, 행정지원, 언어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아동의 보육) ① 도지사는 아동의 보육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본인과 결혼이민자 등의 부(父) 또는 모(母)의 합법적 또는 불법적 체류자격이 아동의 보육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 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④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제24조 (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생활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②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등의 혼인과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③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등의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제4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2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중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1.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2.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4.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등 관련 시민사회단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및 단체
- ② 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11>
1. 다문화가족 지원 세부계획의 수립
 2.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어교육, 정보화교육, 문화예술교육, 취업·창업교육 및 훈련
 3.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실적의 보고
 5.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홍보, 지원관련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6.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알선, 창업지원
 7.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 등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활동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상담업무, 결혼이민자 등의 고충처리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가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5장 보착

제27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도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8조(민간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

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에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2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844호, 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BSTRACT

A Study on the Ways to Expand ‘Tolerance’ in the Multi-cultural societies – Focused on Jeju Island –

Seong-Hwa Mo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Soo Hwa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framework of tolerant policy to the public through content analysis of a series of intensive interviews with both immigrants from foreign countries to Jeju Island and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bout their experiences about intolerant cases at face to face encounter everyday situations. It is significant that we try to make an opportunity for them to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Jeju society on their way as a member of immigrants. Of course, it will be appropriate for Jeju society to prevent conflicts between citizens and immigrants in advance. To achieve the aim, I try to find a couple of discussion about aspects of multicultural society, articulate some arguments on real intolerant situation, and do a research on some indicators on factors which influences intolerant ones each other in Jeju community. As the result of researches on indicators on tolerance-untolerance situations, we can suggest a comprehensive policy and solutions to intolerant situations. It's a time for us to tolerate

each other that will play their role as energy for development of society as a whole. In the end, they can understand each other for co-evolution toward common commitments of integrated community. In a sense, this study can classify some cases into six kinds of groups to the public upon basic assumption that society can be developed into integrated community dialectically through actualizing right phases of immigrant policy as follows;

- 1) Characterisitics and figures of people who tolerates each other
- 2) Characteristics of people who doesn't tolerate each other.
- 3) Some cases are conflicts with Jeju residents
- 4) Some cases of multucultural families are not accustomed with Jeju society
- 5) Some cases of children of multucultural families are not accustomed with Jeju society
- 6) Some cases of people who respects cultural customs of native countries.

I can find some kinds of implications about multicultural phenomena from my case studies as belows ;

First, Jeju people is inclined to tolerate each other facing situation multicultural phenomena.

Second, I confirm that the more they tolerate each other the more they understand Ieju dialect to the extent.

Third, I learn that understanding of cultural differences is significant factor that makes them to tolerate each other.

Fourth, I learn they feel some kinds of intolerance from some cases at shopping makets or making use of transportation such as bus.

Fifth, as I conclude that public shows some kinds of disrespect to foreigners from their poor native countries, we need some kinds of policy to improve tolerant attitutes toward them.

Sixth, immigrants are proud that they recommend their relatives and friends to choose Jeju island as their newly native hometown.

I want to propose some ideas of making Jeju island tolerant society overcoming intolerant phenomena at every corner of Jeju society as follows ; Firstly, we need an institutional responses and strategies to intolerant phenomena in Jeju society, in which residents activate their philosophy to tolerate multicultual situation in Jeju island.

Secondly, it is essential for us to respond to preparing for opening a more tolerant stage of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 of some differences of members in Jeju society functionally and legally.

Thirdly, we are ready to support a kinds of tolerant attitute which tolerate each other in Jeju society. We are together that to tolerate somebody is as same as to be tolerated by someone such as leading a kinds of tolerance movement in everyday situation of ordinary people in Jeju society.

Fourthly, we are ready to respond to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from doing tolerant multicultural phenomena everyday face to face encounter situations in every corner of Jeju society. Basically tolerant attitudes makes society going toward a more creative and desirable destination.

